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자유기업원 공동세미나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22년 11월 15일(화) 10:00-12:45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2

주최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Next Generation's Future Strategy Institute 자유기업원

후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자유기업원 공동세미나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C/O/N/T/E/N/T/S

개회사 / **이석복**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 2

축 사 / **안철수** 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구갑 의원 — 4
최재형 국민의힘 종로구 의원 — 6

환영사 /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 8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 10

발표1 /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 13
- 기업 생존환경을 중심으로
최선집 월드클래스 기업협회 고문

발표2 /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승계 합리화 방안"** — 49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발표3 /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 73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

토론1 /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 83

토론2 /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89

토론3 /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 101

개 회 사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이석복**

오늘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기업원과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시기적으로 시의적절하고 큰 의미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고 기업환경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안철수 의원님과 최재형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한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그동안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오늘 발제해 주실 전문가들과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한국기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근본적으로 성찰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앞으로 기업환경을 좀 더 친기업적으로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장기업협의회가 이 세미나를 후원해 주시는 뜻도 그런 소망을 담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기업환경은 과거와는 다른 초유의 저성장시대에 접어 들었고, 또한 초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기업이 생존과 성장에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뿌리깊은 반재벌, 규제만능, 반기업 정서로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와 높은 증여세, 그리고 까다로운 가업상속 조건 등으로 크든 작든 모든 기업들이 본연의 기업활동에 지

장을 줄 정도로 짓눌려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한국기업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 고성장 시대에 맞춰진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노력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유와 창의를 독려하고, 건강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기업 자신뿐 아니라 국민과 정부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세금 마련하기에 바빠 기업의 승계 코스트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 나라의 경제를 망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이룬 한국경제 성공의 토대인 기업이 승계를 앞두고 감당할 수 없는 세금리스크에, 제도적 리스크에 큰 소리도 못 내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으로 우리기업들이 당면한 생존의 조건을 환기시키고, 기업 생존의 당면과제를 제시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업환경에 정통하신 최선집 월드클래스 기업협회 고문께서"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하는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물음에 지혜로운 답을 해 주시기로 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으며, 김용민 대표님과 황승연교수님의 발제에서 구체적인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토론을 맡아주신 옥동석, 양준모, 전삼현 교수님 등, 세 분의 학계 최고 전문가들의 기탄없는 의견교환으로 향후 바람직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탄탄한 공감대(concensus)를 형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구갑 국회의원 **안철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분당갑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자유기업원이 함께하는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세미나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이석복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님과 자유기업원의 최승노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실 최선집 고문님, 김용민 대표님, 황승연 교수님, 토론을 진행해주실 옥동석 교수님, 양준모 교수님, 전삼현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과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거센 물결 위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서 승자독식의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어 우리 기업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더 키우면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신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변수가 전개됨에 따라 국가와 기업은 세계화 시대와는 다른 적응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물결 위에서, 우리는 이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현실성 없는 정책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기업과 국민, 그리고 국가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새 정부의 기업규제와 성장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국민의힘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자유기업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세미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위해 애써주신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석복 이사장님과 장태평 원장님, 그리고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수익률 제고를 위한 깊은 고민 없이 기계적인 운용을 해 왔던 것은 아닌지, 또 수탁자 책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권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국내 투자 비중을 낮추고 해외 투자 비중을 현재 28%에서 4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대주주들이 주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이성구 박사님, 발표를 맡으신 최선집 변호사님,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님,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나서주신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

춘 나라가 되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환 영 사

자유기업원 원장 **최승노**

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원장 최승노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복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님을 비롯해 바쁘신 가운데 세미나 개최를 축하해주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님과 최재형 의원님, 더불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 간 기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이제는 이겨내고 다가올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각종 규제와 과도한 조세정책, 막대한 상속세 등으로 인해 기업이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뜻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리 행정가들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그의 명저 『노예의 길』에서 '부의 생산을 통제하는 것은 인간의 삶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본래 목적은 부의 창출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막대한 상속세는 기업의 지속경영을 저해하고 기업가들의 경영 의욕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OECD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입니다. 기업가들에게 자신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국민 형평성을 핑계로 국가에 헌납하라 하는 행태는 기업의 성장 의욕을 떨어뜨릴 뿐

입니다.

소유권과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은 곧 자유의 통제를 의미합니다. 이를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해답은 기업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경영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통제와 규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의 소유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며, 시장을 개방해 기업가가 자유로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자유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역할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사회가 부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방향'입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배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배라도, 아무리 훌륭한 항해사를 가졌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항해하지 못하는 배의 여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항해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은 기나긴 여정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나침반은 다름 아닌 '자유의 증진'입니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사회, 개인의 소유와 재산권이 보호받는 사회, 개방된 경쟁시장 안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의 증진이라는 근본 가치에 입각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자유기업원 등 싱크탱크를 비롯한 재계와 학계에서는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기업의 자유 증진과 기업환경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상세히 논의될 수 있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 영 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구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구용입니다.

오늘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자유기업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하고 저희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후원하는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 -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공동세미나에 동참해주시며 축사를 해주신 안철수 의원님과 최재형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표를 맡아주신 최선집 고문님, 김용민 대표님, 황승연 교수님과 토론을 해주실 옥동석 교수님, 양준모 교수님, 전삼현 교수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사회를 맡아주신 이성구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기업환경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과 우·러 전쟁,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생존은 물론 세계 경제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민과 함께 하며 기업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출범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차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한 기업 규제의 벽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기에는 아직도 우리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며 해외의 다른 나라와 동등하거나 완화된 경영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이전 정부의 과도한 기업 규제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높은 기업 상속세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게 까지 경영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가치 창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규제 개혁과 함께 기업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세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각종 기업 관련 규제 개혁과 함께 과도한 기업 상속세 부담 또한 완화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잘 조성해주신 경영환경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1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 기업 생존환경을 중심으로

최 선 집
월드클래스 기업협회 고문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기업의 생존환경- 기업경영재산상속세폐지

최선집 월드클래스 기업협회 고문

HMMA 2002년 착공. 2005년 완공

▲ 현대자동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 전경. 출처= 현대자동차 미국법인(HMMA) 공식 홈페이지 캡처

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the federal state of Alabama from 2000 to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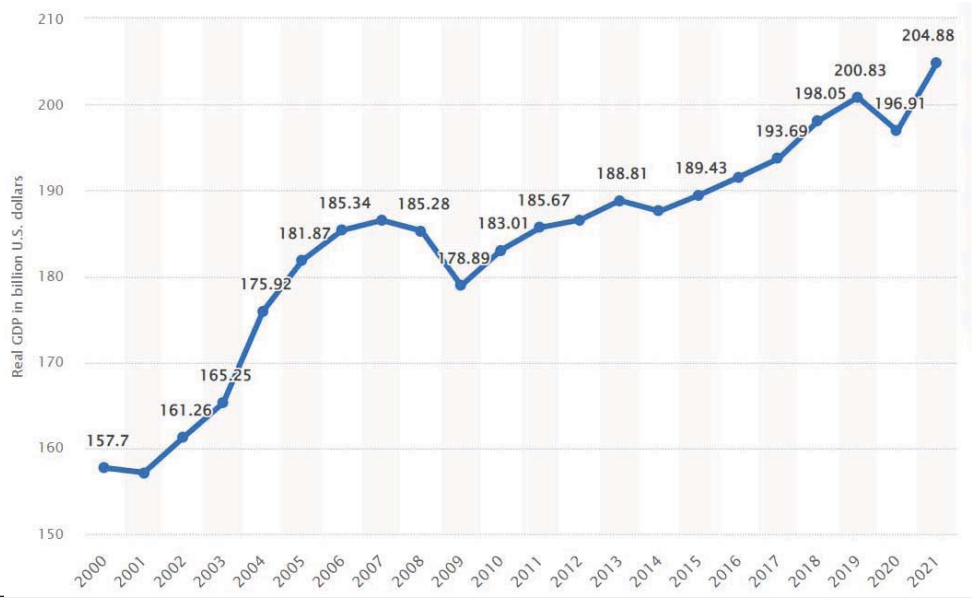

Per capita real Gross Domestic Product of Alabama from 2000 to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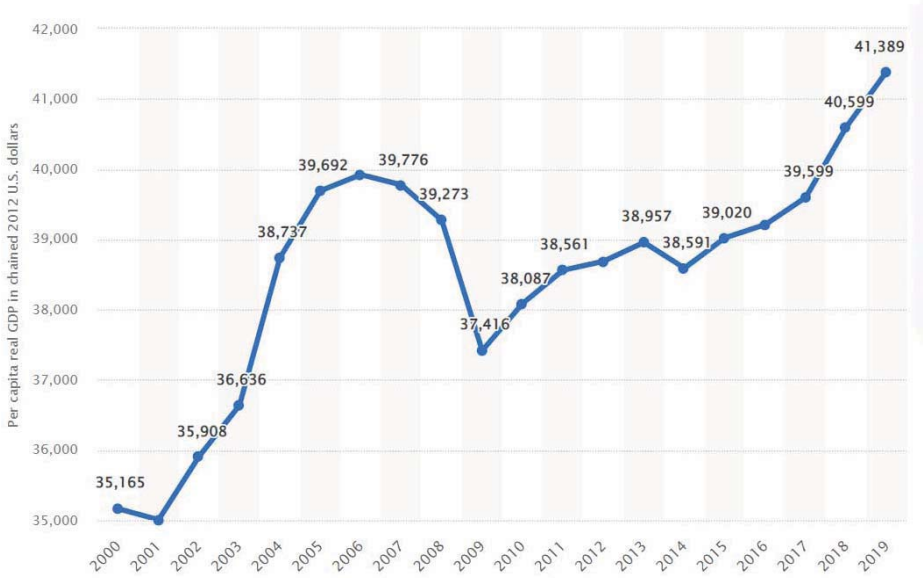

1인당 GDP: 무한욕망의 현명한 활용

1955년 :　　64.090 USD
2021년 : 34,983.700 USD (한국은행. $ 1.799조 -2021)

경제"성장"- 양적 계량 대공황이후 Simon Kuznet

인간의 무한한 욕망(굶은 자의 장래를 대비하려는 욕망, 부유한 자의 현시적 소비욕망, 모방, 선망, 질투에 기인한 욕망)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무한욕망의 현명한 활용- 경제시스템의 핵심.

Circular flow model of the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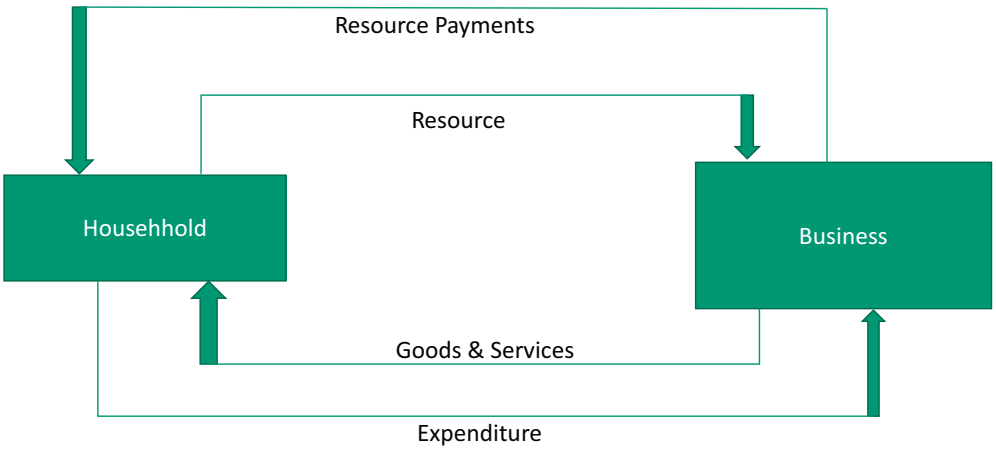

Circular flow model of the economy

expenditures=dollar value of production
goods and services = Real Gross Domestic Product
resource payments = value of factors

Value of production= gross domestic product = total factor income

외자기업유치

- 일자리 창출; 도시화 추동. 소득증가. 경제성장
- 기술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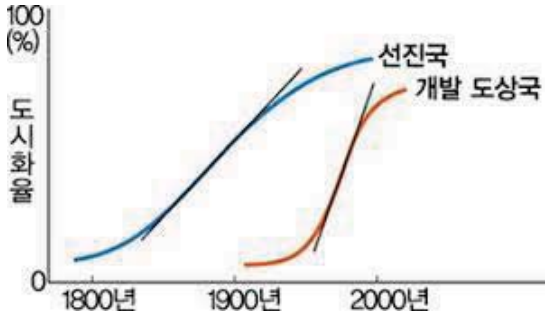

도시화와 경제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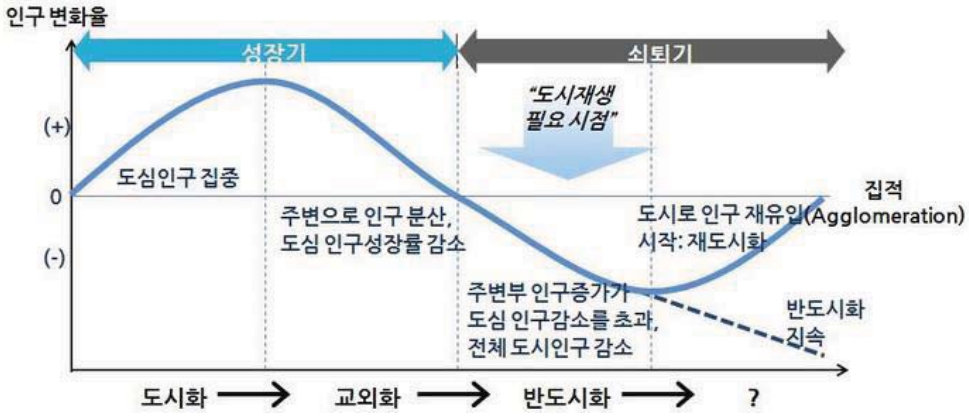

아일랜드의 외국기업유치와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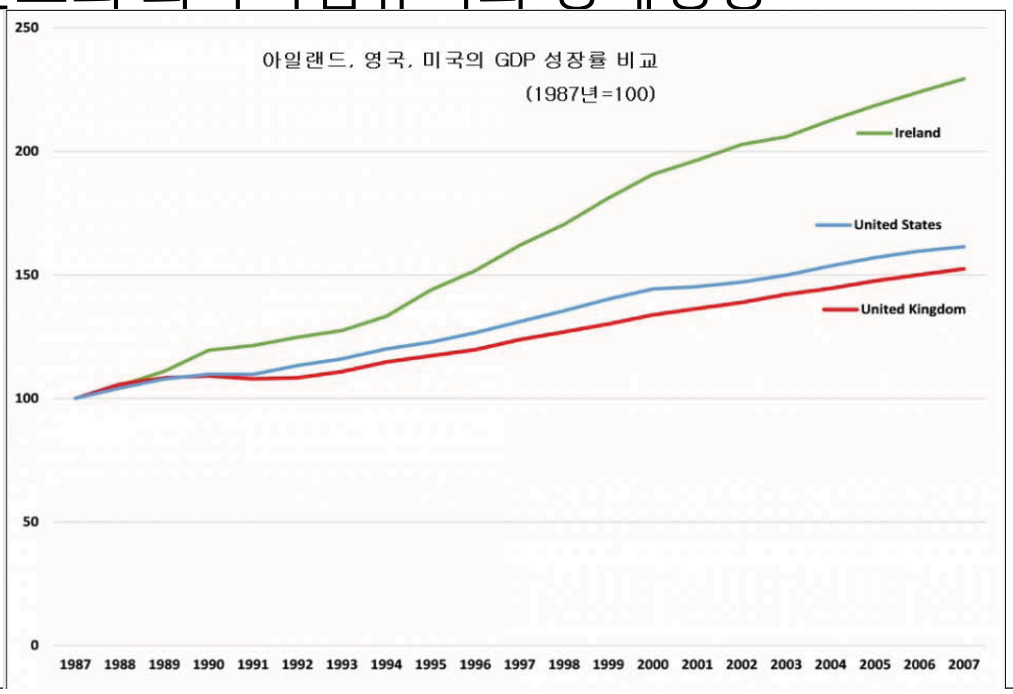

아일랜드 1인당 GDP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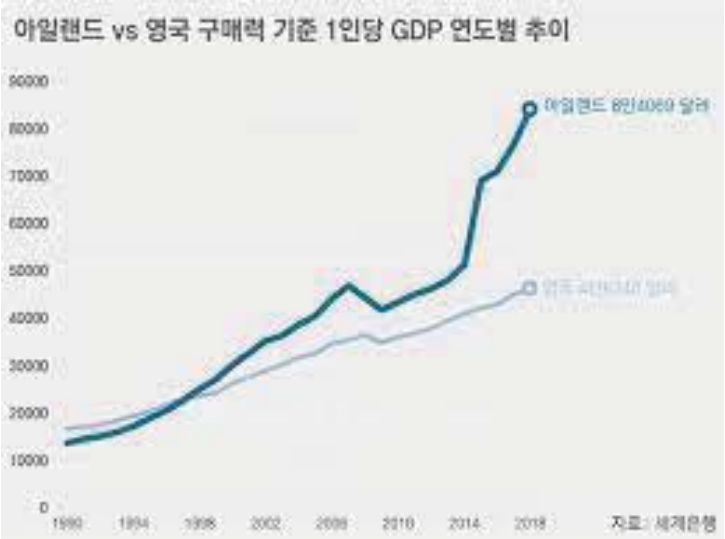

외국기업 유치로 부국 실현

(cf. 한국 경제자유지수 47위 2021기준)

아일랜드:

1인당 국내총생산: 80,989.597 USD(2019년)

외국인 소유의 다국적 기업은 아일랜드의 상위 20개 기업 중 14개 기업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 노동력의 23%**를 고용하고 징수된 **법인세의 80%를 납부.**

아일랜드는 개방경제(**경제자유지수 5위**)로 고부가가치 외국인직접투자(FDI) 흐름 1위다.세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에서 아일랜드는 IMF 186개 중 4위, 세계은행 187개 중 4위다.

중국

한국의 외국기업유치

- **기업유치 사활 건 외국, 나가라고 등떠미는 한국**
- 오상헌/김재후/정영효 기자 ohyeah@hankyung.com

Inequality and Pov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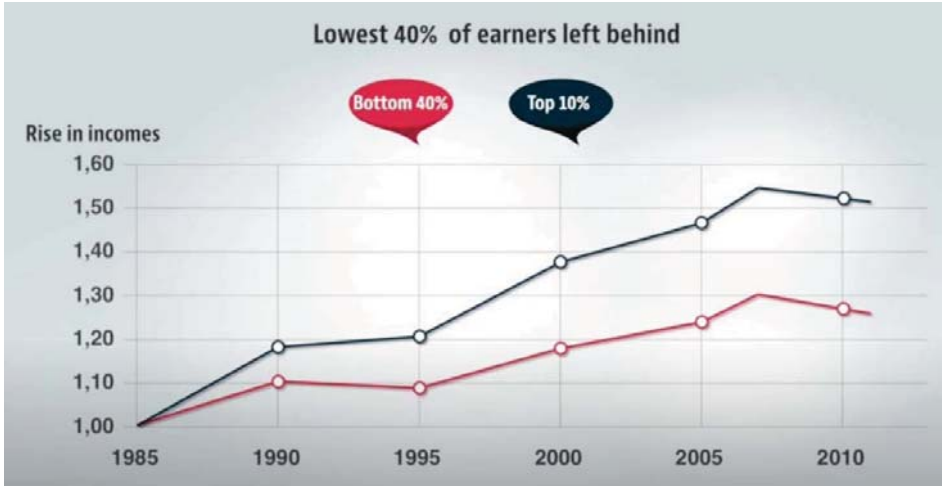

Inequality and Pov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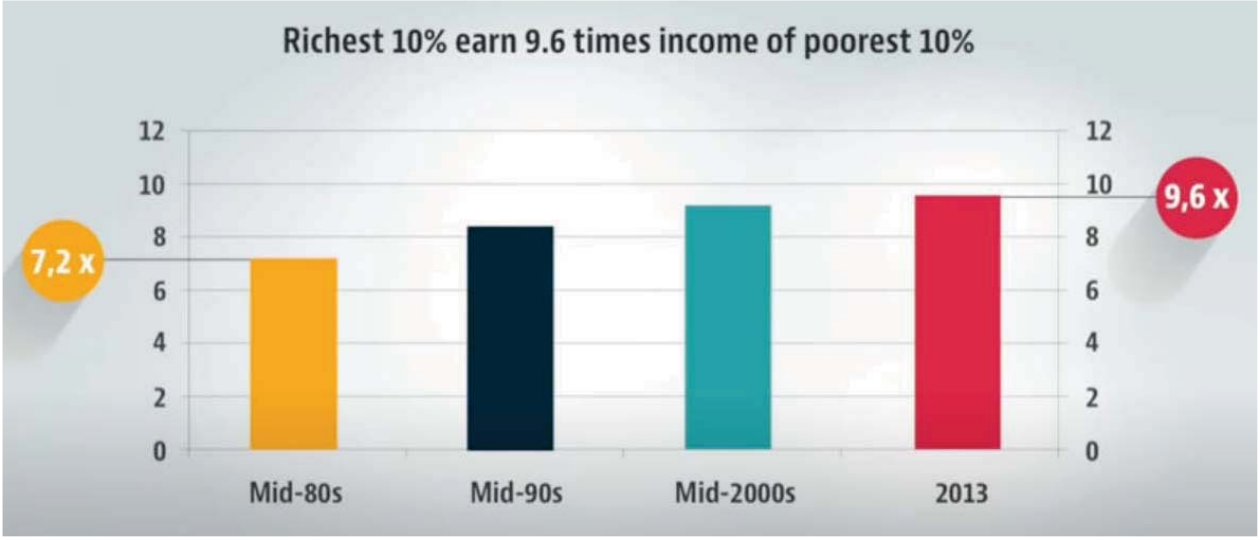

Political Solution? -Inequality and Poverty

분노와 적개심 ?

" 왜 우리는 분노해야하는가 ? "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 George Orwell, Animal Farm ?

Political Solution? -Inequality and Poverty

재벌개혁??

지주회사?
재벌해체?→holding company per se illegal

경제민주화?

시스템디톡스

• Detoxification : “독성물질의 생체내 변환 "
몸속에 쌓인 해로운 독성물질을 배출한다.
살아있는 한 계속 독소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다양한 이해관계반영. 지속적인 디톡스. 건강한 시스템 유지해야.

변기가 막혔는데 물 내리면 어떻게 되나?
“ **대사적 활성화: metabolism activation** “-어떤 것은 약물대사(**신체에 의한 약물의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오히려 독성이 강화**

Political Solution? -Inequality and Poverty

知所先後면 則近道矣리라

Political Solution? -Inequality and Poverty

物有本末하고
事有終始하니

외환위기전후의 소득양극화

소득양극화의 수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검토.

5분위배율 ↑ = **소득양극화** ↑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눠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5분위 배율이다.

- 이정우,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소득분배, http://www.hani.co.kr 최종입력 2009-08-23 22:44 최종방문

Relationship b/w Inequality and Income Quintile Share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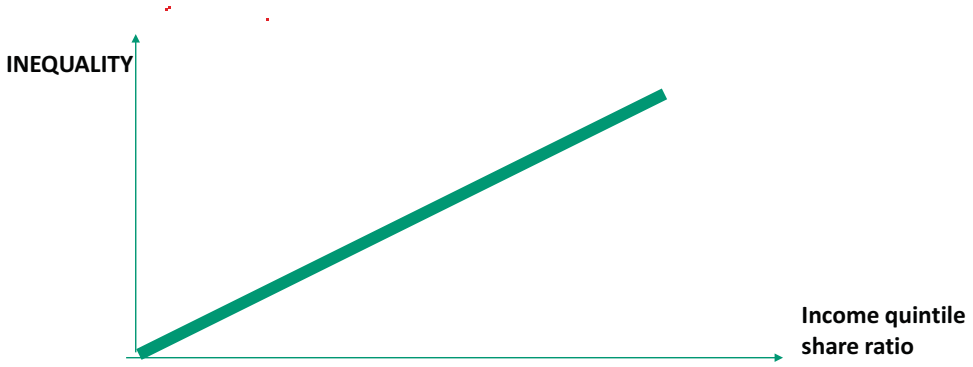

외환위기전후의 소득양극화

	1/5분위(하위 20% 소득점유율)	2/5	3/5	4/5	5/5 (상위20%소득점유율)	5분위배율 (불평등정도)
1996	8.60 ∨	13.96	17.82	22.77	36.85	**4.28** ∧
2000	6.96 ∨	12.54	16.88	22.09	41.53	**5.97** ∧
2003	6.25	12.49	17.27	23.43	40.56	**6.49**

YS정부 - 외환위기

1997 외환위기 : 일자리 상실;
실업자 수 **60여만명에서 2배로 폭증**

한국경제연구원. IMF 구제금융 충격에서 벗어나던 1999년 12월 'IMF 경제위기 이후의 산업기반 변화와 구조조정 실태분석' 보고서

조사 대상은 전국 311개 기업으로 종업원 5~49인의 영세 기업 105개, 50~299인의 중견기업 111개, 300인 이상 대기업 95개.

YS정부 - 외환위기

대기업 75.8%, 중견기업 64%, 영세기업 61.9%가 인력 정리해고.

1996년 조사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396.4명이었으나 1998년에는 328.3명으로 급감.

인력 조정 부문은 사무직(38.5%), 단순노무직(37.5%)에 쏠렸고 고급 기술 인력 조정은 4.3%에 그쳤다. **구조조정 직급은 사원급(56.5%)에 집중**.

실업자수의 폭증

매경, 이종혁 기자입력 : 2020.03.25 17:55:16 수정 : 2020.03.25 19:40:11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한파 직전인 1997년 12월 국내 실업률은 3.1%, 실업자 수는 **65만**8000명 .

한 달 후 각각 4.5%, **93만**4000명으로 증가.

실업자 수는 2월 사상 첫 **100만명**(123만5000명)을 돌파한 이래 약 25개월간 100만명대 유지.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

DJ정부: **카드대란**.(1999.9 시작- **2003 신용불량자 372만명**) ,

벤처부실화 (2000년 3월 10일에는 코스닥 지수가 **2834.4**로 사상 최고를 기록.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그해 12월 26일 코스닥 지수는 **525.8**로 급락)

- 실제로 1997년 가계신용 규모는 200조원으로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수준이었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은 1600조원을 넘어서 GDP 대비 94.8%에 이른다.

- 노무현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 (2003년 이후 -)

→→중산층 축소와 양극화 부채질

Inequality and Poverty

- 생계형 일자리→ 최저임금형 일자리→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형 일자리 → 평균임금 이상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감소

- 자산가격 폭등

- 정부의 이전지출?

기업평균수명 : 10년 안팎

- **"기업 평균수명 50년대 61년→2027년 12년?**

2020년에는 평균수명이 10년 안팎까지 더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폭으로 기업 수명이 감소하는 것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경영환경도 급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금 당장은 '초격차' 지위를 자랑하더라도 한순간에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HONN70D

기업하기 힘든 나라, 한국

자유기업원2015.05.20

- 2007년에 신설된 기업의 연도별 생존율:

1년 뒤에는 38.2%의 기업이 사라지고,
2년부터 5년부터 각각 50.7%, 58.5%, 64.2%, 69.1%.

: **5년 뒤에는 10개 중에 단지 3개 기업만이** 살아남는 것으로 기업평균수명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음.

기업하기 힘든 나라, 한국

자유기업원2015.05.20

- 창업 **200년 이상 장수기업**:
 일본이 3,113개(43.2%), 독일 1,563개(21.7%), 프랑스 331개(4.6%)

 우리나라 ;
100년 이상 된 기업: 두산 등 7개사(두산, 동화약품, 몽고식품, 광장, 보진재 등)
60년 이상 법인기업도 184개사 수준

양질의 일자리 - 기업의 생존

기업이 장수할 수록 양질의 일자리 가능성 높아지고,
관련 **산업의 기술도 발전한다**.

인식전환;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생산주체가 아니다. 기업이 생산주체이다.

국가는 기업이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환경.기반을 마련하여 주는데 집중해야 한다.(노동.공정거래.부패방지.기반시설.교육, 금융 등)

- 생산요소를 결합. 경영하여 성과를 내어 국가경제에 기여하게끔 해야. **기업은 경쟁력을 잃으면 자연소멸**. 총체적 돌봄이 필요한 존재.

인식전환-
정부역할

- 경쟁력 강화는 **기업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경영외적 환경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이는 전적으로 공동체 국가의 몫이다.

- **노동시장**. 물가.

법집행의 일관성/투명성. 신뢰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

각종 **인프라**(도로.항만. 물류시설. 전기. 수도. 통신시설.산업입지 등).

교육수준. **금융.**

조세부담 .....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국가의 역할에 크게 의존

인식전환:
살아남는 기업 =사회에 유익한 기업

- 국내시장 개방: 해외시장은 물론이고 **국내시장 조차도 국제적 경쟁력 갖춰야.**

- 더구나 4차산업혁명으로 **승자독식 경제**가 자리잡아 갈 가능성이 큼 :

소재독점. 장비독점(네덜란드의 ASML). 기술독점 등

경영안정화→사회적 편익증대→"The Wealth of 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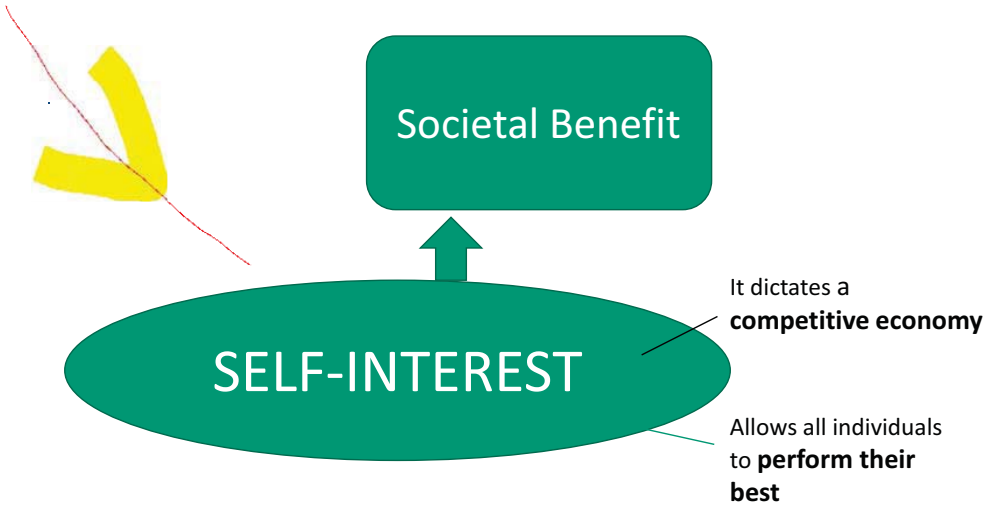

사유재산제도/ 상속세- 경영권위협의 최대요인

사유재산제도= 개인적 이기심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타심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사유재산제도.

→

이 제도의 기초는 상속이 되어야 완전하게 작동

상속세 감면

- 상속세의 감면이 필요. 실제 상속세 폐지는 **과세이연**에 불과함. 주식양도시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됨

- 적어도 경영권에 필수적인 지분의 상속은 상속세 과세면제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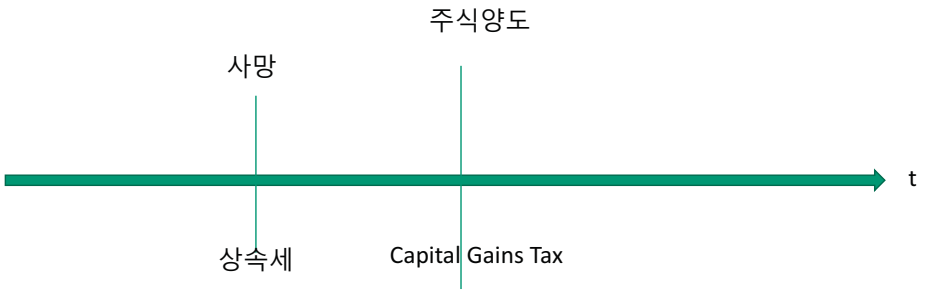

상속세: **Tax Planning. Equity Issue**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회사가 외국에서 설립된 경우, 본사가 해외로 이전한 경우, 주식상장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내소재재산(?)**

-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자

거주자= 주소 OR 183일 이상의 국내 거소

‘1주당 29표’
쿠팡이 다시 불지핀 ‘차등의결권’ 논란

지분 2%로 58% 영향력 행사 가능
‘복수 의결권’ 국내법에선 인정 안 해

벤처 한정 ‘10배 의결권’ 법안 국회 제출
시민단체 “지배구조 개선 포기” 반발
미·중·싱가포르 등은 제한적 허용

공익재단의 활성화. 차등의결권제도

사유재산제도의 보장과 상속을 유인으로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고용을 일으키도록 유도하여야 함.

공익재단의 활성화와 공익재단을 통한 의결권행사를 확충하여야 하고, 창업자 주식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한 사적 이기심을 만족시켜주어야 함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목표= “Job Creation”

- 중소기업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양질일자리 창출이다.

보호에 안주하여 더 이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로 더 이상 보호할 이유가 없다.

일정기간 보호받으면 자립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여야 한다.

주요 국가 GDP 구성비 (2009-2013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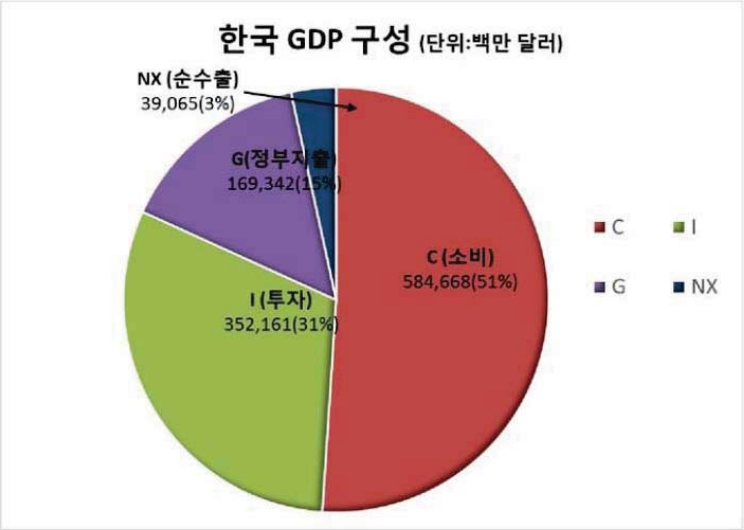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

<u>GDP 대비</u>
수출입비율:
1990년 53.0%
2021년 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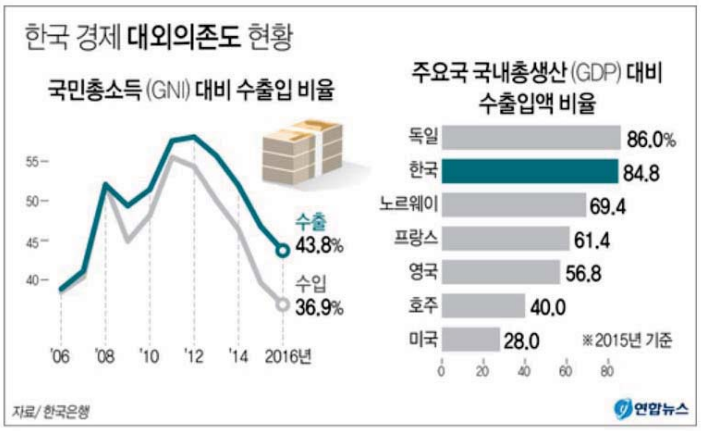

장예진 기자 / 20170404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전체 수출에서
대·중견·중소기업이 차지한 비중

단위: 달러, 자료: 통계청 및 관세청, ( ) 안은 수출액

구분	2017년 (5726억)	2018년 (6024억)
대기업	66.4% (3803억)	67% (4038억)
중견기업	15.9% (909억)	16.1% (970억)
중소기업	17.7% (1014억)	16.9% (1016억)

비교규제 comparative regulation

- 모든 규제에는 그 이유가 있다.
- 그러나, **경쟁상대국과 동일한 정도의 규제만 허용하여야** 한다.

- 축구경기에서,

왼발잡이. ,

3분이상 혹은 30m 이상 단독드리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선수를 훈련시켜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가?

소유와 경영의 상관관계 (Berle, Gardiner가 공동으로 1930년 1,1, 기준으로 미국의 금융회사를 제외한 최대주식회사 200개사를 조사)

소유권**> 80%:** 소유주 개인지배,

> 50% : 과반수 지배,

> 20% : 소수의 여러 군의 주주 들 중의 하나인 소수파지배,

< 20 % : 소유와는 관계없는 **경영자지배**, 즉 경영권을 쥔 전문경영인이 자신이 영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영속적 self-perpetuating 구조 형성됨 .

.

소유와 경영의 상관관계

(Berle, Gardiner가 공동으로 1930년 1,1, 기준으로 미국의 금융회사를 제외한 최대주식회사 200개사를 조사)

우리 기업:

창업시에는 오너개인지배,
그 이후 상장과정을 거치면서 **주식분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업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부문에 투자를 하게 됨에 따라 자본조달을 위하여 당초의
오너의 **지분은 희석**.

그러다가 결국에는 **전문경영인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

지배주주 지분율 낮은 경우, 가업승계 적용도 불가.
지주회사가 해결책도 아니지만, 지분율 낮아 전환요건도 미충족.

Ramifications

- 경영권 안정을 위한 사회적 비용

1. **기업생존여건의 악화 →. 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Ramifications

2. 상속세 자금 마련을 위한 변칙적 행위→기업경쟁력 약화→일자리 감소

- Entrepreneurship 범죄 유인 (사업기회유용, 지분증가위한 Reorganization etc.)

- 문어발식 기업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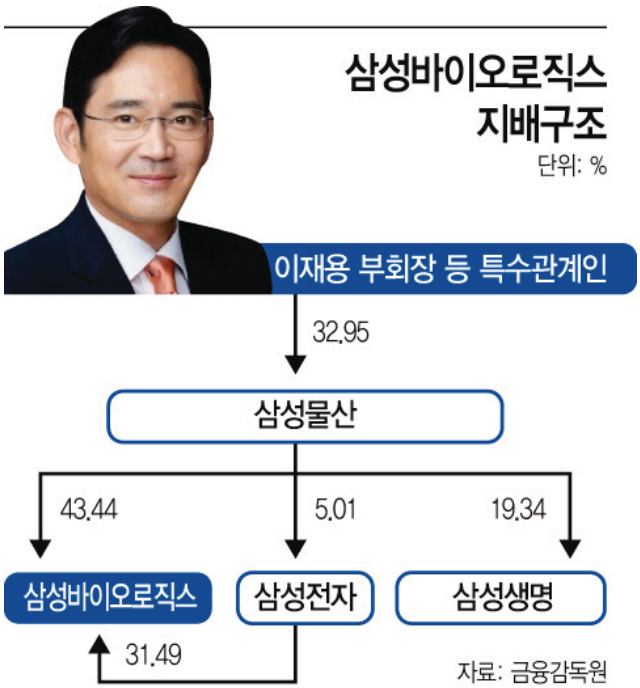

Ramifications

3. **경영권 방어를 위한 비용증대** → 기업경쟁력 약화
 - 자사주 매입 등

4. **R&D 투자활동 위축** → 기업경쟁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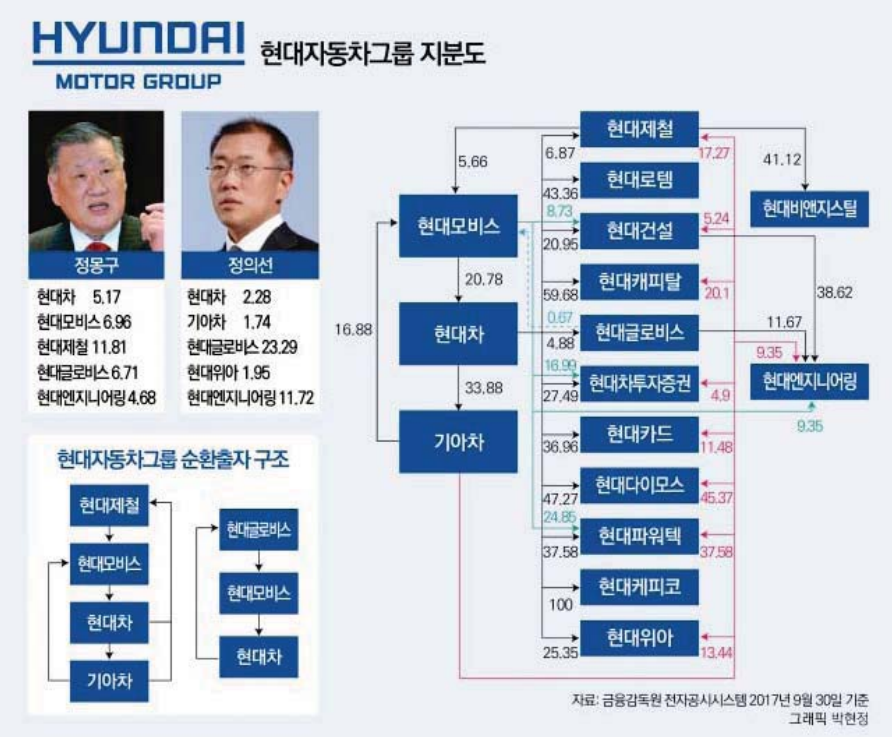

기업 경영 재산에 관한 국가적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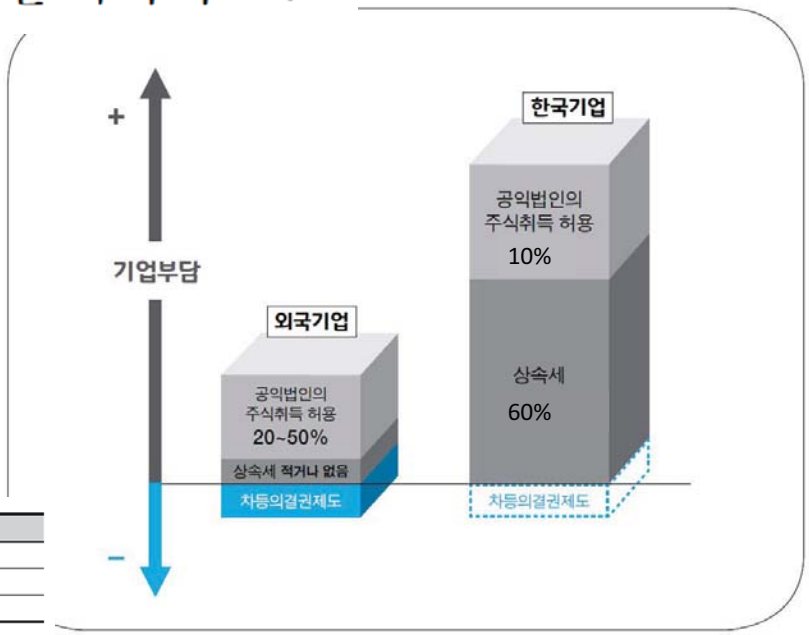

	외국기업	한국기업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20-50% 허용	10% 허용
상속세	적거나 없음	60%
차등의결제도	O	X

Other Management Atmosphere

기업오너의 기업채무 연대보증 제도-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제도?

Management Buy Out/ Leveraged Buy Out- 배임죄 적용 여지

상속세 폐지 국가의 과세현황

구 분	과세시기	과세소득
캐나다 (ITA 1985, sec248)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피상속인의 자산처분이득
호 주 (ITAA 1997, Div100)	상속인의 자산 처분 시점	피상속인의 자산처분이득 + 상속인의 자산처분이득

캐나다 · 호주의 자본 이득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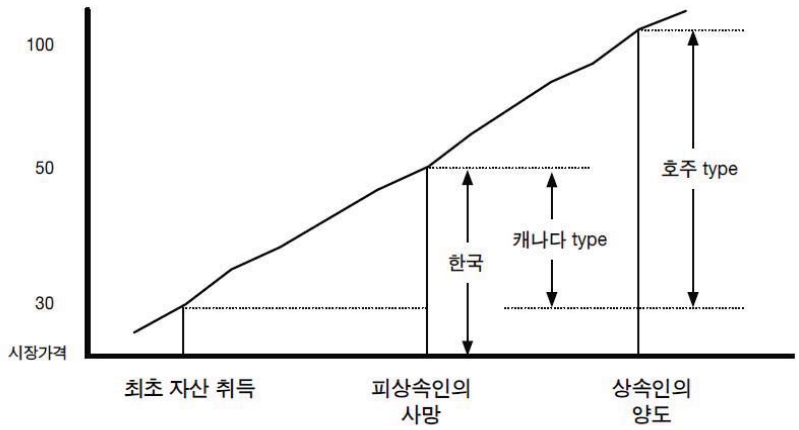

주가변동과 상속세,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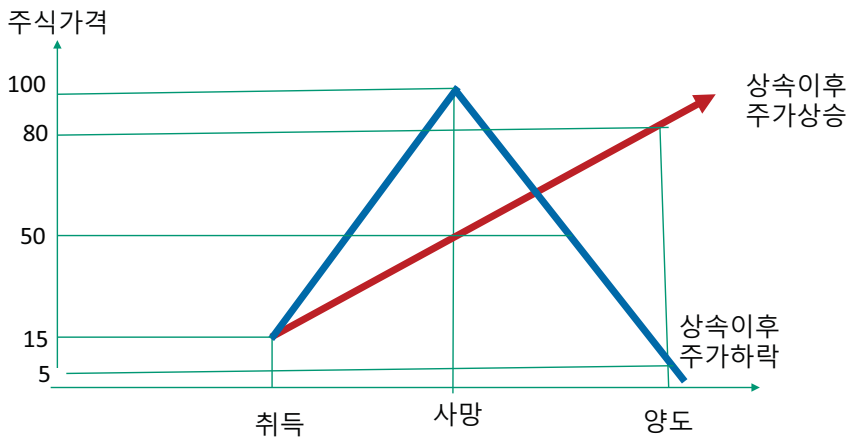

주가변동과 상속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Capital Gains Tax)

	상속이후 주가상승	상속이후 주가하락
상속세 과세표준 (현행)	50	100 *
양도세 과세표준 (Capital Gains Tax) 도입시-상속세폐지	65 (80-15)	Capital Loss -10 (5-15)
양도세 과세표준(현행)	30 (80-50)	Capital Loss -95 (5-100)

기업경영재산

- 기업경영에 필요한 주식의 일정부분에 관하여 상속세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로 전환; → 기업활동 중 주식처분 불가. 경영권 불안정으로 인한 고용부정적 효과 차단.
- 최소 **특별결의 가능한 정도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상속세 폐지
- 고용효과와 연계시키는 방법도 가능한 지 고려해 보아야.
- 타 경영권 안정화 장치도 함께 손질하여야.

자립성 상실-인간의 존엄 상실

헌법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립성 상실-인간의 존엄 상실

■ 삶의 의미 추구

■ 경제적 자유 달성

■ 자립성 상실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헌법상 국가의 의무

“최저생계비도 안돼”… 노인 10명 중 5명, 연금 받아도 일손 못 놔

연금 받으면서 일하는 고령인구 370만 명…6년새 46.7% 증가

최소생활비 216만 원인데 연금은 138만 원

韓 노인빈곤율, OECD 37개국 중 최악

뉴시스

박현익 기자

입력 2022-11-02 11:02 | 업데이트 2022-11-02 11:13

“일자리 복지” 필요성

- 실업자수 817만명

취업자수 2817만 2천명 (2022.Sep)

임금근로자 2150만6천명 (동아일보 2022.10.16)

월100만원미만 9.4% (202만7천명)

월100만원이상 월200만원 미만 15.9% (342만6천명) 동아일보 2022. 11. 2. “최소생활비 216만원인데 연금은 138만원. 노인 절반”

1,361만+@

2020년 3,738만명-생산가능인구

결론 – 최소한으로서의 “일자리 복지 “

- **일자리 복지가** 최고의 복지는 아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자면, 최소한 , 일자리 복지를 갖추어야. (공공일자리= 한시적 복지)

이를 위하여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어떻게 키우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 → 각국 정치지도자들이 전력투구 ; e.g. 벨기에 투자유인책

- 일자리 복지에 더하여, **의미있는 삶의 추구와** 일을 통한 삶의 의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육과 또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

Q & A

인간은 권력을 축적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그 권력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별로 뛰어나지 않다 • 모르텐 알베크, 삶으로서의 일, 감영사, p. 110

발표2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승계 합리화 방안"

김 용 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자유기업원 공동세미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승계 합리화 방안

김용민(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2022.11.15.

1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상속세제

Ⅲ. 상속세제의 국제비교

Ⅳ. 기업승계 합리화 방안

Ⅴ. 추진방안

2

Ⅰ. 들어가며

• 우리나라는 부의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에 기대어 상속과세를 강화하여 왔음
- OECD국가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명목세율은 50%로 일본 55%에 이어 2위이나,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로 사실상 최고세율)로 기업의 상속이 어려워 지속적인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

• 이제는 경제의 주춧돌인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 '부의 대물림 차단'이라는 과세형평만 좇다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토대를 망가 뜨릴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 소득재분배 정책 수단은 조세와 정부지출로서, 조세는 간접적으로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나 정부 지출은 직접적으로 소득재분배에 기여
- 우리 상속세제는 그동안 소득재분배(형평성)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의 창출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고려가 부족
- 소득재분배는 그 효과가 직접적인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하고, 세제는 도식적인 과세형평보다는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3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율과 실효성 없는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기업승계 포기 사례가 늘었음

- 쓰리세븐(손톱깎이 생산업체, 당시 세계 1위)은 지난 2008년 150억원의 상속세로 인해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고, 유니더스(콘돔 생산업체, 세계 1위)는 5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으며, 락앤락(밀폐용기 제조업체, 국내 1위)은 생전 상속세 부담을 고려하여 2017년 말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음

◆ 상속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시점

-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여 혜택을 받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 우리경제의 견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기업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에서 배제되고, 선진외국과는 달리 공익재단도 5% 지분한도에 걸려 활용이 불가

4

Ⅱ. 현행 상속세제

1. 상속세 과세방식

-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유산세 방식)하고,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유산취득세 방식)

2. 세율 : 5단계 초과누진세제(10%~50%)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0%)

■ 최대주주 할증평가

- 최대주주의 주식은 평가 가액에 그 가액의 20%(중소기업은 제외)를 가산

→ 이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50%)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인 60%(50% + 50%×20%)가 되는 결과

5

상속·증여세수 현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상속·증여세수는 2021년 15.0조원으로, 전체 국세(344.1조원) 대비 4.4%를 차지
  - 상속·증여세수는 2010년대에는 전체 국세 대비 비중이 2%대를 유지하며 완만하게 상승해 왔으나, 2020년에는 3.6%, 2021년에는 4.4%로 급격히 상승
  - 최근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6

3. 기업승계세제

가. 가업상속공제

- 중소기업의 육성· 장려정책의 일환으로서 피상속인의 가업이 그 후세에 이어질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상속인의 가업상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구분	내용
가업 요건	①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피상속인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로 재직할 것 ③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상속인 요건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상속인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일 것 ③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7

가. 가업상속공제(계속)

▪ 가업상속공제 금액

- 아래와 같이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달리 적용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 가업상속재산이란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함으로써 인수하게 되는 가업재산을 말하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달리함

구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상속재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개인기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법인기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주식 등 ×(1 -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비율)

8

가. 가업상속공제(계속)

- **사후관리**

: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해당 (다만, **중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은 허용**)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세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

- ④ **상속 후 7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상속 전 근로자 수의 100% 이상 또는 상속 후 7년간 총 급여액의 전체평균이 기준총급여액 이상(7년후 판단) + **각 사업연도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의 80% 이상 또는 각 사업년도말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 이상(매년 판단)

- **기간별 추징율표**

기간	추징율
5년 미만	100%
5년 이상 7년 미만	80%

9

가. 가업상속공제(계속)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10년(3년 거치기간 허용)또는 20년(5년 거치기간 허용)으로 우대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

가업상속재산 비율	연부연납기간
50% 미만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3년의 거치기간 허용**)
50% 이상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5년의 거치기간 허용**)

10

가. 가업상속공제(계속)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10년(3년 거치기간 허용)또는 20년(5년 거치기간 허용)으로 우대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

가업상속재산 비율	연부연납기간
50% 미만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3년의 거치기간 허용**)
50% 이상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5년의 거치기간 허용**)

11

가. 가업상속공제(계속)

□ 가업상속공제 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가업상속공제받은 자산은 완전비과세가 아니라 나중에 상속인이 이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과세되어 피상속인의 자본이득만큼 과세이연(2014.1.1.이후 상속 양도분부터 적용)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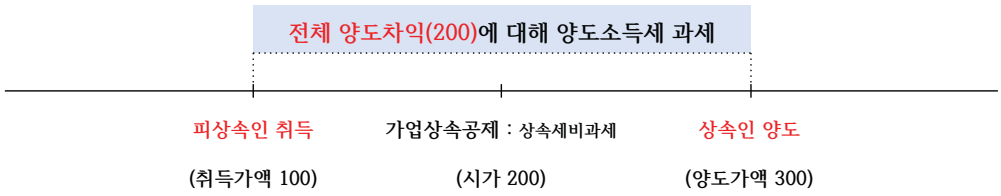

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상속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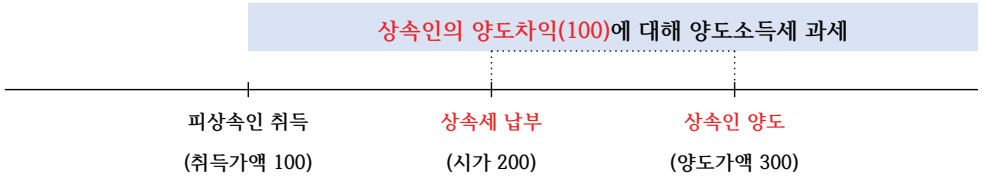

12

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증여 시 증여세 일반 누진세율 (10~50%)이 아닌 10% 또는 20%의 저율로 증여세 부담
  → 향후 상속이 발생한 시점에 기한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 징수**
- 증여세 산출세액
  - **{가업자산 상당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증여한도)-5억원} x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

구분	내용
가업 요건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②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
증여자 요건	①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 포함) ② 최대주주로서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증여세 추징사유	증여 후 7년 이내에 다음 사유 발생 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가산세)을 추징함 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 유지하지 않는 경우 ②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업종변경은 허용) ③ 주식 등을 증여 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13

4. 공익법인 출연재산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에서는 교육 · 사회복지 · 문화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출연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

- (상속세 비과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후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함
  -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되, 상속인이 출연받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않아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야 함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주식이 그 내국법인의 총 발행 주식수의 5%(또는 10%, 20%)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다만, 상속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또는 10%, 2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14

4. 공익법인 출연재산 비과세(계속)

■ 공익법인의 준수사항

•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함

(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①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1년 연장 가능)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에 대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②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출연재산을 매각 시 해당 매각금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세 및 증여세 부과

* 1년 이내 30% 미달사용액 및 2년 이내 6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 3년 이내 90% 미달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증여세 부과

15

4. 공익법인 출연재산 비과세(계속)

③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 [출연재산 평가가액 × (목적 외 사용금액 / 운용소득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 운용소득 중 기준금액에 미달사용한 경우

: 미달사용한 운용소득의 10%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

16

4. 공익법인 출연재산 비과세(계속)

(2)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준수사항

※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경영권의 우회지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제한 규정은 1990년 말 상속세법 개정 시 도입되었으며, 그 전까지는 제한 규정이 없었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 등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 제외)의 5%, 10%,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

- **5%**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 또는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의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의 요건 : 운용소득 80% 및 출연재산가액 1% 이상의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이사의 구성 등 요건 충족
- 10% : 일반적인 경우
- 20% :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법인일 것

4. 공익법인 출연재산 비과세(계속)

<표> 주식의 취득 및 보유 시 준수사항

구분	판정기준	적용대상		한도	의무위반시 제재
출연·취득	출연받을 때 또는 출연재산으로 취득시 지분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 또는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5%	초과분 증여세 부과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10%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 법인	20%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 주식으로 주무관청 승인받음	-	
			10% 초과 출연분 3년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	
보유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시 총재산가액 대비 비율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30%	초과보유분 가산세 부과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이행	50%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자료: 임동원,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방안, p8

Ⅲ. 상속세제의 국제비교
1. 상속세율의 국제비교

□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국가의 평균인 25%의 2배에 달하고, 일본을 제외하면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을 보임
- 최대주주의 주식은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OECD국가 중 최고임

□ OECD 38개 국가의 상속세율을 살펴보면 15개국은 상속세 폐지 또는 미도입, 15개국은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 1개국은 소득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7개국은 소득세율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음

- 상속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인식하에 자본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에 오히려 유용하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15개국은 폐지 또는 미도입
- 피상속인이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문제를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국가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등 15개국에 달함
- 상속세와 소득세와의 형평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1개국
- 부의 이전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유지하는 국가는 일본, 한국, 미국, 스페인, 헝가리 등 7개국

19

1. 상속세율의 국제비교(계속)

※ OECD국가의 상속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

상속세율>소득세율 : 7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 1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 15개국	상속세 폐지(또는 미시행) : 15개국
일본(55%>45%) 한국(50%>42%) 스위스(42%>11.5%) 미국(40%>37%) 덴마크(36.25%>23.08%) 스페인(34%>22.5%) 헝가리(18%>15%)	프랑스(45%=45%)	상속세율 10% 초과 : 8개국 영국(40%<45%), 아일랜드(33%<40%), 벨기에(30%<50%), 독일(30%<45%), 칠레(25%<40%), 네덜란드(20%<52%), 핀란드(19%<31.8%), 슬로베니아(14%<50%) 상속세율 10% 이하 : 6개국 그리스(10%<45%), 터키(10%<35%), 아이슬랜드(10%<31.8%), 리투아니아(10%<15%) 폴란드(7%<32%), 룩셈부르크(5%<40%), 이탈리아(4%<43%)	멕시코(1961년) 캐나다(1972년)* 호주(1979년)* 이스라엘(1980년) 뉴질랜드(1992년)* 포르투갈(2004년) 슬로바키아(2004년) 스웨덴(2004년) 오스트리아(2008년) 체코(2014년) 노르웨이(2014년) 에스토니아(미시행) 라트비아(미시행) 콜롬비아(미시행) 코스타리카(미시행)

주: * 자본이득세 과세국가
자료 : 임동원, 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2022.6. p11

20

※ 명목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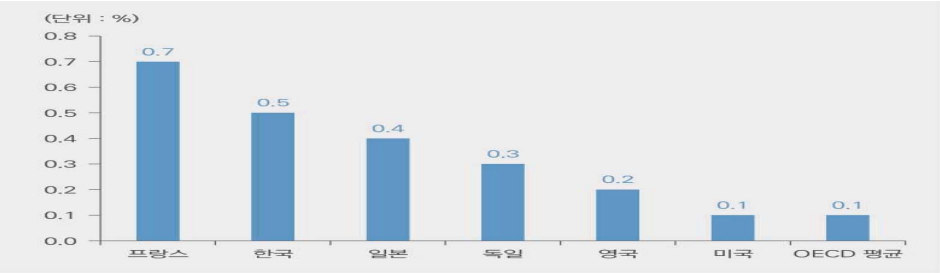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0년 명목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이 한국은 0.5%로 OECD 평균 0.1% 대비 약 5배가 되며,
  - G5 중 프랑스(0.7%)를 제외하고는 일본(0.4%), 독일(0.3%), 영국(0.2%), 미국(0.1%) 보다 높음

21

2. 주요국의 주식 할증평가 제도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음**
  - 미국은 개별사안별로 할증 · 할인을 하며, 영국은 소액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인이 가능하나 할인폭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독일은 순자산가치 등을 기초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주식 가치라고 보며,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10% 할인 평가
  - 일본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지배주주 주식과 그 외 주식에 대하여 평가방식을 달리 함
    - · 지배주주 주식은 순자산가액, 유사상장회사 주가 등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소액주주 주식은 배당금을 기초로 평가
    - · 배당금으로 평가한 소액주주 주식 평가액이 지배주주 평가액보다 클 경우 지배주주 평가액을 한도로 함. 즉, 소액주주 주식 평가액은 지배주주 주식보다 낮게 평가되도록 하여 소액주주 주식은 할인 평가

<주요국의 주식 할증할인 평가제도>

구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상	최대주주 (상장· 비상장)	개별주식	소액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할증율	20% (중소기업은 제외)	개별사안별 할증· 할인	할인가능	10% 할인평가	없음

* 자료 : 김두복,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83.

22

3. 주요국의 기업승계세제 지원제도

□ 상속세 제도의 유지 또는 폐지에 따라 각 국가별로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방식에 차이가 있음

•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가업상속을 조세측면에서 지원

- 독일은 기업규모의 제한없이 가업상속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자산 2,600만 유로(약 365억원) 초과 기업은 필요성 심사 절차가 있음
- 일본은 비상장 주식에 대해 납세유예하는 방식으로 가업상속을 지원함

• 상속세를 폐지한 대표적인 국가인 캐나다와 호주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제도가 없으며, 상속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있음

23

(1) 독일의 기업승계세제

기업승계공제 혜택대상 기업재산
= 기업승계재산 – 비업무용 재산 중 승계혜택 제외 금액

가업성격 강한 승계(정관에 승계전 2년, 승계후 20년 동안 지분을 가족구성원, 공동주주 및 가족재단에게 이전하는 것을 정한 경우) **최대 30% 사전공제**

혜택대상 승계재산 금액 **26백만€(약 365억원)**

① 26백만€ 이하 (사전공제시 37.14 백만€(522억원이하))

- **85% 공제**: 사후관리 5년간 사업유지 및 인건비 총 400%유지*
- **100% 공제**: 사후관리 7년간 사업유지 및 인건비 총 700%유지*

26백만€(사전공제시 37.14백만€)초과시 ②,③ 선택

② 체감적 공제

- 85%/100% 공제: 사후관리요건 좌동
- **90백만€(약1,265억원, 사전공제시 128.6백만€,약1,807억원) 까지 매75만€마다 1%씩 공제율 축소적용**

③ 필요성 심사 후 감면

- **상속인의 기 보유 사재 및 비업무용재산, 상속받는 사재 및 비업무용재산 등 합계의 50% 금액**으로 상속세 납부 불가능할 경우 **동 금액 초과 상속세 전액 감면**
- 7년 사업/인건비 700% 유지

* 총 인건비 유지조건 승계 직전 5년간 회사의 연평균 인건비를 기준으로 함.

* 자료 : 이성봉, "백년기업 조건 : 상속 이렇게 풀자", p.35

24

(2)일본의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

구분	법인판	개인판
사전계획 책정	5년 이내의 특례승계계획 제출 (2018.4.1.~2023.3.31.)	5년 이내의 개인사업승계계획 제출 (2019.4.1.~2024.3.31.)
적용기한	10년 이내의 증여·상속 등 (2018.1.1.~2027.12.31.)	10년 이내의 증여·상속 등 (2019.1.1.~2028.12.31.)
대상 주식 수	비상장주식 등	특정 사업용 자산
납세유예 비율	100%	100%
승계유형	복수의 주주로부터 최대 3인의 후계자	선대 1인으로부터 후계자 1인 원칙 (일정한 경우 동일 생계 친족 등으로부터도 가능)
증여요건	일정 수 이상의 주식 등을 증여할 것(후계자 1인의 경우 2/3이상 등 원칙)	해당 사업과 관련된 특정 사업용 자산의 전부를 증여할 것
고용확보 요건	탄력화	없음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한 감면 등	있음	있음 (후계자가 중증장애 등의 경우는 면제)
경영승계원활화법 인정의 유효기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최초 승계(증여·상속)로부터 2년간

자료 : 전규찬 외(2021), p119.

25

(3) 캐나다의 자본이득과세

□ 캐나다는 상속세를 19세기 후반부터 주정부 수준에서 도입하여 1903년까지 모든 주에서 도입되었고, 연방정부까지 확대됨

- 그러나 징수비용과 주정부 간의 조세경쟁으로 인해 20세기 후반에 들어 상속세는 사라지게 됨
- 1971년 연방정부의 상속세가 폐지되고, 1986년 퀘백주를 끝으로 주별 상속증여세도 폐지

□ 명목상 상속증여세는 폐지되었으나, 상속 또는 증여 시 해당 자산이 세무상 처분(deemed disposition)된 것으로 의제되어 자본이득이 과세됨

- 사망 · 증여 시점에 자산의 가격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산의 가치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함
- 자본이득은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이 중 50%가 과세소득이며, 이 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에 합산되어 경상적인 소득세율(15%~33%)의 적용을 받음

26

(4) 호주의 자본이득과세

□ 호주는 과거 19세기 초반에 상속세를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연방정부에서도 전쟁비용 재원 마련을 위해 누진세율 형태로 상속세 제도가 적용됨

- 그러나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상속세 개정 또는 폐지 압력이 서서히 증가하였고, 1979년에 연방정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였으며, 1984년까지 모든 주에서 상속세를 폐지함

□ 상속세 대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자산을 받은 수혜자가 추후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처분이득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부과되며, 과세시점은 상속인이 자산을 이전받는 시점이 아닌 추후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임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할 때 자본이득을 계산하여 과세함
- 호주의 자본이득은 별도의 세금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소득과 합산하여 경상소득의 누진세율 (0%~45%)의 적용을 받음

27

4. 주요국의 공익법인 주식보유 제한 및 과세

□ 주요국의 공익법인의 출연주식 보유한도를 보면, 미국은 20%, 일본은 50%임

<표> 주요국의 공익법인 주식 관련 규정

구분	출연기업의 총주식수 대비 취득 제한	추가 의무 조항
미국	20%	-
일본	50%	20% 초과 보유 시 해당 영리기업 공시
한국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0%, 20%	계열기업 주식은 30%(50%)까지만 보유 가능

* 자료: 임동원,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방안, p.19.

28

5. 해외 대기업 경영권 승계 사례

◆ **[미국 Ford] 포드재단(공익재단)에 대한 주식(보통주) 출연과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으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권 유지**

- 차등의결권(Class B)은 1주당 16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Class B를 Ford 가문이 소유

◆ **[스웨덴 발렌베리]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소유권 확보**

- 차등의결권제도를 통해 A주 1주는 B주 10주와 같은 의결권을 갖게 되므로 발렌베리 재단이 가진 지주회사 지분은 23%에 불과하지만 의결권은 50%임(2018년 기준)
- 또한 **공익재단**을 통해 승계가 이루어져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었음
- 발렌베리의 지배구조가 가능했던 건 노사정 대타협(살트셰바덴 협약) 때문임
  - ✓ 기업 오너는 상속세 없는 공익재단 출연, 차등의결권 등을 허용받는 대신 고용을 지키며 수익 대부분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
  - ✓ 현재 발렌베리 재단은 배당수익의 80%를 과학기술, 의료, 대학연구사업 등 사회에 환원하고, 20%만 계열사에 재투자하고 있음

29

5. 해외 대기업 경영권 승계 사례(계속)

기업 (국적)	승계 세대	기업승계 관련 활용 제도	특징 및 시사점
Ford (미국)	4세대	· 차등의결권 · 공익재단 · 차등의결권 가문 내 거래 협약	· 창업주 Henry Ford 가 1935 년 차등의결권과 재단설립을 결합, 상속세 부담 최소화 및 지배력 유지하는 방식으로 승계 · 차등의결주에 대한 가문 내 주식거래 협약으로 세대를 넘어 지분 및 지배력 회석 문제 해결 · Ford Foundation, Ford Fund 등을 통한 공익기여
BMW (독일)	3세대	· 지배력 유지 및 승계목적의 지분관리회사	· Quandt 그룹의 승계과정에서 BMW 지분은 마지막 결혼에 따른 직계가족에게만 승계하여 지분 분산 및 갈등 방지 · 직접적인 지분증여가 아닌 유한합자회사 형태의 BMW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증여하는 방식의 승계 플랜을 통해 상증세 부담 완화 및 지배력 유지
Henkel (독일)	5세대	· 가족지분 풀링협약 · 일부 가족이 설립한 재단	· 가족 간 합의를 통한 총수 선출 및 가문 지배력 회석 방지를 위한 가족지분 풀링협약 · 1985 년 최초 체결, 3 회 연장으로 2033 년 유효 · 협약은 판례를 통해 민법상 조합으로 법적 지위 인정 · 가족 간 다양한 소통기회로 유대감 강화 및 기업가치 공유
Heineken (네덜란드)	4세대	· 다층적 지주회사 · 공익재단	· 2 단계 지주회사지배구조로 승계과정 지배력 유지와 상속세 완화 · 공익재단을 통한 상속세 완화 · 여러 세대에 걸친 기업존속을 고려한 장기적인 기업승계 계획
발렌베리 (스웨덴)	5세대	· 차등의결권 · 지주회사 · 공익재단	· 지주회사와 차등의결권으로 지배력 유지 · 지주회사는 공익재단을 통해 지배하고, 승계는 공익재단을 통해 이루어져 상속세 부담 완화 · 공익재단을 통한 활발한 사회기여활동으로 사회적인식 제고

자료 : 이성봉, 해외 대기업의 승계사례 분석과 시사점, p.14.

30

Ⅳ. 기업승계 합리화 방안

- 기업승계와 관련된 현행 상속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1)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
2)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더욱 높게 만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3)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유명무실화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중소기업 및 연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만 해당하여, 매출액 4천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제외
   - 엄격한 사전 · 사후 요건으로 인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기피
   - 사전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으나, 과세특례 한도도 적고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 실적이 저조
4) 공익재단 출연 등 기업승계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미흡
   - 선진 외국의 경우 공익재단 출연, 차등의결권 제도 등을 통해 대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공익재단 출연 한도(5%)가 너무 적고, 차등의결권도 인정되지 않아 기업승계에 어려움

31

1. 상속세율 인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법적으로 재산이 축적되었을 거라는 것과 '상속은 불로소득' 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상속세로 인해 국부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 라는 경제적 손실을 간과
- 이에 따라 세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최고 수준이며, GDP대비 상속·증여세부담은 OECD국가 평균의 4배에 달함

□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상속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23개국이며,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미시행하는 국가는 15개국임
- 특히 캐나다(1972년)를 필두로 호주(1979년), 뉴질랜드(1992년), 스웨덴(2004년), 오스트리아(2008년), 노르웨이(2014년) 등이 상속세를 실시하다가 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인식 하에 상속세를 폐지하였음
- 하지만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였지만 이를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여 상속세의 부작용은 제거하면서 과세형평을 도모하도록 하였음

□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에 속해 상속세로 인한 이중과세, 경제활력 훼손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큰 실정임
- 당장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25%)으로 낮추고**,
- 다음으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임

32

1. 상속세율 인하(계속)

□ 우선,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25% 수준)을 감안하여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상속세는 생전에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난 후의 재원 그 자체이거나 그것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으므로, 소득세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 따라서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논리에 맞으며 대체로 최고세율의 수준은 30%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됨.

⇒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를 10%~30%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변경하여,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

현행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0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30억원 초과	30%

33

2.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개선

□ 할증평가의 획일적 적용의 문제점

•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인해 최대주주 상속·증여세율이 최고 60%에 달하여, 상속 재산의 크기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라는 권리 자체가 불확실해 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우려.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영국· 독일 등은 소액주주에 대하여 할인평가를 적용

□ 개선방안

- 현행 할증평가는 회사의 자산, 업종, 경영실적, 성장잠재력, 대외 위험도,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할증액을 산정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OECD국가중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더욱 과중하게 만들어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걸림돌로 작용

⇒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34

3.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

□ '가업상속공제 '를 '기업승계세제 ' 라는 용어로 변경

▪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2016-2020년 연평균 이용건수가 92.8건으로, 독일의 연평균 9,995건에 비해 적용건수가 독일보다 100배 이상 적어 매우 저조함

-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가 저조한 이유는 가업상속공제요건(가업 · 피상속인 · 상속인 ·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데 기인하며, 특히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전체 평균 100% 유지 · 업종 변경 제한 등의 사후관리요건이 대표적인 애로불만 사항임

▪ 현재 가업상속공제에 관련된 많은 문제는 일자리 및 소득의 유지 · 창출이라는 목적 보다는 '가업상속공제 ' 라는 단어의 협소한 의미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

→ 기업이 계속 일자리 및 소득을 유지· 창출토록 하도록 하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가업상속공제 ' 라는 용어를 **'기업승계세제 '** 라는 용어로 변경함이 바람직

35

※ 한국과 독일의 가업상속공제 실적 비교

◆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6-2020년 연평균 이용건수가 92.8건, 총 공제금액 2,866억원으로 저조한 상황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9,995건, 공제금액 146억유로(한화 약 19.4조원)에 달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적용건수가 독일보다 100배 이상 적음

구 분	한 국		독 일	
	건 수	공제금액 (백만원)	건 수	공제금액 (1,000유로)
2016년	76	318,378	10,636	21,424,522
2017년	91	222,598	9,260	20,387,105
2018년	103	234,421	8,773	11,634,555
2019년	88	236,343	9,263	12,022,511
2020년	106	421,049	12,043	7,688,724
평 균	**92.8**	**286,558**	**9,995**	**14,631,483**

자료 : 임동원,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안, p13

36

3.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계속)

□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독일 · 일본의 경우와 달리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 이연해 주는 것임

- 즉, 상속인이 향후 상속재산을 처분(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이 당초 취득했던 가액으로 함으로써 피상속인 생전에 증가한 자본이득을 포함하여 과세함
- 따라서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자본이득 과세의 성격**을 가짐

□ 상속 관련 자본이득과세제도는 크게 '**무상이전 시 자본이득과세방식**'(캐나다 방식)과 '**승계취득 가액 과세방식**'(호주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캐나다 방식은 상속 시점에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과세함으로써 과세이론상 형평을 기할 수는 있으나,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결집효과가 발생하여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37

3.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계속)

- 호주 방식은 무상이전 시점에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을 무상취득자가 그대로 승계하고 무상취득자가 해당 취득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하는 방법으로서, 상속시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없애줌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추후 양도시 그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모두 과세하므로 조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해당 자산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하지 않고 상속인이 추후 해당 자산의 양도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하는 **호주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현재 기업승계와 관련 상속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증여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상속이든 증여든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38

◆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합하여 "기업승계 과세특례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업승계 시 자본이득과세 제도(승계취득가액 과세방식)를 적용토록 함**

-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를 대폭 완화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유지 · 창출 및 경제성장을 도모
- 현재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한도 및 요건 등이 차이가 있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추후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가액에 포함하여 정산토록 되어 있으나, 두 제도가 모두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하므로 통합하여 동일한 한도 및 요건 등을 적용토록 함.
- 따라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아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조건을 충족하면, 현재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정산토록 하고 있으나, '기업승계 과세특례제도'로 변경되면 자본이득과세의 적용을 받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한정된 적용대상이므로, 승계취득가액과세(자본이득과세)는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함. 단,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총급여요건을 중소·중견기업보다 강화(예 : 중소·중견기업 90%, 대기업 100%)할 필요가 있음.

39

※ 2022년 세법개정안 가업상속공제 관련 내용

▪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적용대상을 중견기업만 한정적으로 확대하고,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대기업은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고,
- 업종유지는 '중분류 내 ' 에서 '대분류 내 ' 로 확대했으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업종유지 의무는 삭제함이 바람직

구 분		현행	2022년 세법개정안
적용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매출액 1조원 미만
피상속인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40%(상장법인 15%) 이상
공제한도		200억원(10년이상), 300억원(20년이상), 500억원(30년이상)	400억원(10년이상), 600억원(20년이상), 1,000억원(30년이상)
사후관리요건	기간	7년	5년
	업종유지	중분류 내	대분류 내
	고용유지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80%+7년 평균100%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5년 평균 90%
	자산처분금지	20%(5년 이내 10%)	40%

40

4. 공익법인 주식출연 한도 상향조정

□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확대 및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야 함

- 창업자와 2세대 경영인들의 퇴진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원활한 경영권 승계는 대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주요 선진국의 사례(포드재단, 록펠러재단, 스웨덴 발렌베리재단 등)를 참고하여, 재단 등을 통한 공익기여 및 통제방식으로 대기업의 상속 세제 합리화 방안 강구가 필요

□ 현행 상속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경우 5%에 대해서만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완화함이 바람직함

⇒ **미국은 발행주식의 20%, 일본은 50% 범위 내에서 인정하므로, 미국과 같이 상속·증여세 면제 비율을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2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발렌베리 사례처럼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공익활동을 통한 사회환원이 필요할 것임.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활동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41

세제상 지원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Ⅴ. 추진방안

□ 1단계

-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폐지
- 모든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주식 상속·증여세 면제 비율을 20%로 상향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 방식으로 대체

□ 2단계

- 상속세율 인하 : 5단계 초과누진세율(10~50%) → 3단계 초과누진세율(10~30%)
-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상속 시 자본이득과세 방식 전면 적용

42

<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조세수첩“, 2022.4.
- 권성오,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6.
-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2.7.
- 김두복,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김용민,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제9차 조세정책세미나, 2019.5.
- 김용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상속공제 개선방안“, 기업상속공제 개선포럼, 2019.11.
- 김용민, “상속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안“, 국회사무처, 2021.11.
- 이성봉, “해외 대기업의 승계사례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6.9.
- 이성봉, “백년기업의 조건 : 상속 이렇게 풀자”, 뉴시스 백년기업포럼 발표자료, 2019.6.
- 임동원,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22.5.
- 임동원, “상속세 과세방식과 세율의 합리적 개편방안 검토“, 한국경제연구원, 2022.6.
- 임동원,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상속세제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22.8.
- 임동원,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방안“, 2022.8
- 전규안·노희천·조형태·김용수,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세제 개선”, 코스닥협회, 2021.5.

43

감 사 합 니 다

44

발표3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황 승 연
경희대 명예교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황승연
2022. 11. 15.

웬만한 신흥국보다 저평가된 한국 증시

PER 주가수익비율	
인도	22.6
미국	21.2
MSCI 선진국 평균	18.4
일본	13.9
대만	13.0
MSCI 신흥국 평균	12.1
칠레	12.4
중국	11.9
남아공	11.1
페루	10.5
한국	9.9
브라질	6.3
터키	6.1

PBR 주가순자산비율	
미국	4.1
인도	3.4
MSCI 선진국 평균	2.8
대만	2.5
남아공	1.9
페루	1.7
브라질	1.7
터키	1.6
칠레	1.6
MSCI 신흥국 평균	1.6
중국	1.3
일본	1.3
한국	1.0

※5월 31일 기준

자료=블룸버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태:

주가가 낮아서 PBR이 대만, 페루, 브라질, 터키, 칠레보다 낮다.

PER도 경제 위기 상황인 브라질, 터키를 제외하면 최하위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중국	호주	브라질	신흥국 평균	선진국 평균
주가총액	49.63	2.12	1.92	6.00	12.7	1.99	0.84		
PER	24.5	9.8	12.9	13.1	11.9	17.4	6.9	12.3	18.4
PBR	4.2	1.0	2.4	1.3	1.3	2.4	2.0	1.6	2.8
GDP 22년 4월	25.35	1.80	0.84	4.91	19.91	1.75	1.83		
1인당 명목 GDP US Dollar	76,027	34,994	36,051	39,243	14,096	67,464	8,570		

참고 단위: trillion USD, March 2022기준, Source: www.statista.com
미국 주가 총액은 NYSE, NASDAQ 합산, 중국 주가 총액은 Shanghai, Shenzhen 합산.
PER, PBR은 02. May 2022기준, 신흥국 24개국, 선진국 23개국은 MSCI 평균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PBR(2022년 8월 15일)
삼성전자 **1.3**, LG **0.5**, SK **0.6**, 두산 **0.7**, 한화 **0.8**, 롯데지주 **0.4**, GS **0.4**, DB **0.3**, 현대차 **0.7**, 한국조선해양 **0.7**, 포스코홀딩스 **0.4**

		삼성전자	SK Hynix	TSMC
2022-08-15	PER	9.4	6.4	21.1
	PBR	1.3	1.0	5.95
Billion USD	시총(Bn USD)	276	52.3	464

"**전쟁 리스크는 한국보다 대만이 훨씬 큰데 대만의 평균 PER이나 PBR이 한국보다 높다**." 백지윤 (블랙쉬자산운용 대표)의 코멘트

한국증시 저평가는 **전쟁리스크나 MSCI 선진국 지수 미 편입이 아니라 대부분이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가 후진국형이기 때문**이다. 한국 상장사의 대부분의 대주주들은 회사를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경영 의사 결정을 한다.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 물적분할 후 동시 상장 등으로 자본시장 디스카운트 요인 발생.

대주주가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 때문**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총 순위

국내 순위	2017년 12월(25개)	
1	삼성전자	15위
2	SK하이닉스	239
3	현대차	441
4	포스코	527
5	네이버	530
6	LG화학	532
7	셀트리온	552
8	KB금융	574
9	현대모비스	604
10	삼성생명	616
11	삼성바이오로직스	626
12	한국전력	628
13	삼성물산	648
14	신한금융	665
15	SK텔레콤	725
16	SK	773
17	SK이노베이션	809
18	LG생활건강	830
19	아모레퍼시픽	861
20	LG전자	879
21	넷마블	943
22	KT&G	957
23	LG	973
24	삼성SDS	986
25	셀트리온헬스케어	999

2022년 8월(12개)	
삼성전자	31위
LG에너지솔루션	174
SK하이닉스	318
삼성바이오로직스	386
LG화학	545
현대차	580
삼성SDI	596
네이버	601
카카오	718
기아	750
셀트리온	871
삼성물산	974

글로벌 K-기업이 사라진다. 동아일보 2022.09.19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상속세 자승자박?

누가 상속세를 내는가? 어떻게 상속세를 절약하나?

-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평균 상속세수는 연간 2.25조 원. 피상속인의 수는 7,325명.** 연 사망자 30-35만명 중 상속세 과세인원이 7-9천명으로 2-3%에 불과한 것이 일반인들이 상속세에 관심이 없는 이유.

- 상속세를 폐지하면, 대부분이 기업을 경영하는 연간 7-8천명이 상속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배아픈 국민정서**'때문에 상속세 유지를 고수하다 보면, **매년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수백 조 원의 매출과 수 조 원의 세수와 후손들의 미래가 사라진다**.

조세 국제 비교에서
상증세의 수입이
OECD 평균의 5-6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대주주의 최대 관심은 세금(상속세)이고, 소액주주들의 관심은 주가이다.

- 대주주는 50~60%에 달하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 이를 위해 가능하면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지 않게 하고** R&D와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배당** 안하고, **IR(기업홍보활동)**도 하지 않고, **물적분할** 등 많은 **모순**이 존재한다.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방법은 많다.

OECD 회원국의 상속세

OECD 전체 상속세율 평균은 14.5%
상속세 없는 OECD 국가들: 룩셈부르크,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체코 등. OECD 38개 국 중 19개국은 상속세 없고, 다른 국가들 대부분은 가업승계 지원 프로그램.

- 일본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취득한 자사주식의 80%에 대하여 납세유예, 5년 후 면제
- 미국은 부부간 상속, 증여세 없고 부부 개인당 각 1,170만불까지 증여 시 증여세 면제 (약 300억원). 각종 경영권보호 제도와 공익 재단을 통한 기업 지배 가능. 상속세 없이 기업승계 가능
- 영국 상속세율 40%, 비상장주식 100%, 상장주식 50% 공제. 비기업자산 7년 전 증여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
- 우리나라도 가업상속제도를 도입하여 연간 70-80 회사가 혜택을 받는 반해 독일은 약 1만5천 회사가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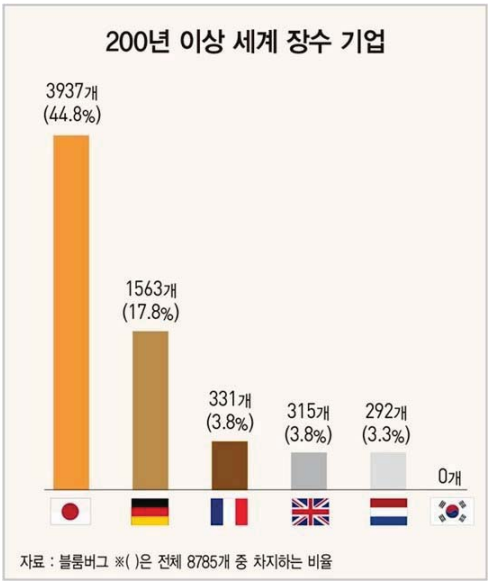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50% 인하	100% 인하
총 일자리	26만7000개	53만 8000개
총 매출액	139조원	284조원
총 영업이익	8조원	16조원
직장인 월급	7000원 증가	1만4000원 증가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파이터치연구원 [그래픽=이호연 기자]

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연구보고서)

나정주 파이터치연구원원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2021.3.26.)

연구의 분석모형은 Grossmann and Strulik(2010)의 모형에 기업분포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22%(법인소득 2백억 이하), 24.2%(3천억 이하), 27.5%(3천억 초과)이므로 법인세가 24.2%로 가정할 경우, 법인세수는 두 경우에 각각 2조원과 4조원에 달한다. 이는 **평소의 상속세수와 비슷하다**.

또 다른 논문:
OECD 자료를 활용한 상속세가 민간 투자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분석.
송헌재, 조하영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2 no. 5.
'**상속세가 높을수록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 상속세를 없애거나 낮추어야!'

스웨덴이 2005년 **상속세 폐지 이후 세수가 증가**하고 **GDP 대비 조세 비율이 낮아짐. 아무도 아무 것도 잃지 않았다. 모두가 Winner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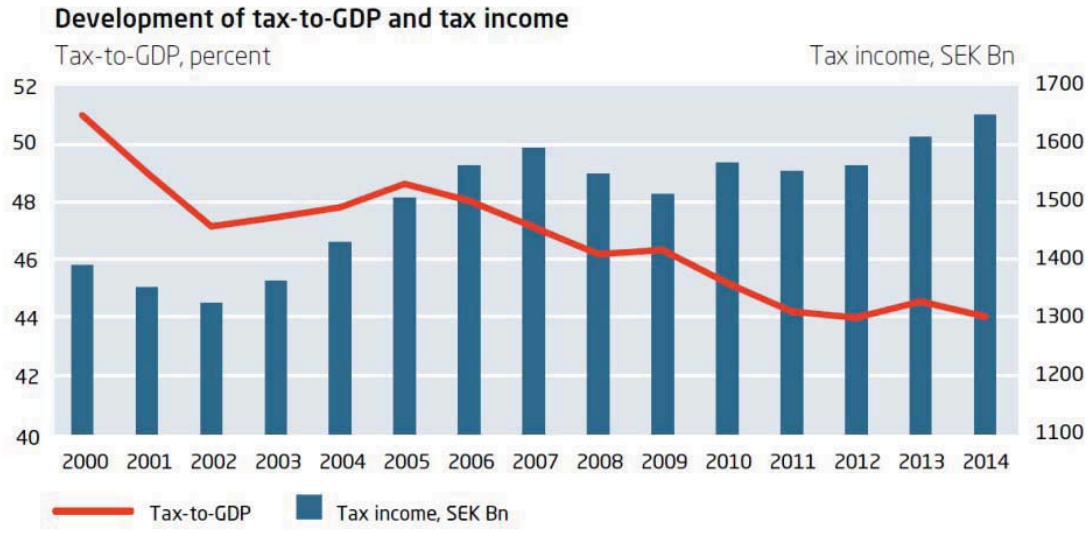

Source: Fall J. & Witterblad M., Tax reductions and public resources, 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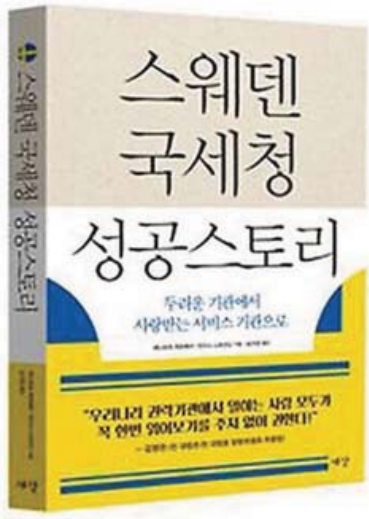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두려운 기관에서 사랑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작가: 레나르트 위트베이,안더스 스트리드
출간: 2020.03.02

스웨덴 정부기관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 국세청이다. 2011년에 337개 정부기관 중 가장 현대적인 기관 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에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공 · 민간단체 중에서도 7위를 기록했다. **2012년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가 국세청을 신뢰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2006년 이래로 15% 증가된 수치이다.

하지만 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스웨덴 국세청은 **세금추징 실적을 우선시하는 '공포'의 세금 강제집행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납세자의 실수를 찾아내 세수를 늘리는 실적 경쟁이 핵심 미션이었다. 가장 **많은 돈을 추징한 세무조사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부서장은 포상**으로 부서원들에게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다. 스웨덴 국세청이 오랜 노력 끝에 두려워하는 세금징수 기관에서 **사랑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 하는 개혁의 과정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기업상속시 상속세 과세 방법을 자본이득세로 변경하면 얻게 되는 변화

- 법인세 증가로 **상속세수 이상의 세수 확보 가능**
- 기업가들의 편법과 **모순적 행위**들의 원인 제거. **기업 경영의 정상화 도모**
- 대주주의 이익과 주주들(개인투자자와 연기금)의 **이해를 일치**
- 개인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거나 출자 전환. **투자와 고용 증가**
- 연구개발과 **중장기적 투자를 가능. 국제 신용도가 상승**
-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발생하는 주가와 관련한 **국제적인 소송 회피**
- **연금 고갈 우려를 상당기간 불식**
-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 외화 유입이 늘어나고 국가 경쟁력이 상승**
- 1,380만명의 주식투자자들의 **자산을 증식시켜 줌**으로써 중산층이 증가
- 기업인, 주식투자자, 국회, 정부, 국민들의 **대 타협**을 통해 주가 1만 시대 열어야!

토론1

토론진행자

옥 동 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교수

토 론 문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인천대학교 무역학부교수 **옥동석**

□ 기업에 대한 시각1: 기업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 수단(Karl Marx, 공산주의)

- 노동가치설 ⇒ "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에 필요한 [누적된] 노동의 양에 좌우 ⇒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적 필요노동'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 정치적 투쟁의 과정으로서 정치인들에게 위임
- 효용가치설 ⇒ 상품의 가치는 수많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 ⇒ 노동의 정당한 가치는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로서, 사전에 결정된 규칙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 ⇒ 비정치적 영역

□ 기업에 대한 시각2: 경제 내의 다양한 분업들을 촉진 조정하는 수단(R. Coase, 거래비용이론)

- 경제적 번영은 ①다양하고 세밀한 형태의 분업, ②분업을 통한 전문화의 생산성 증가로 실현(A. Smith, 「국부론」)

  ※ 다양한 형태의 분업은 개인들의 자기이익(self-interest)에 의해 추동
- 다양한 분업들을 촉진하고 상호조정하는 수단은 시장에서의 '계약(contract)'과 '조직(organization)'에서의 위계(hierarchy)로 양분됨.

  ※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전적 약정'을 통해 조정하는 수단이고, '조직'은 위계에 따른 지휘와 협력의 '사후적 응변'을 통해 조정하는 수단.

- ‘시장에서의 계약’과 ‘조직에서의 위계’에 대한 선택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하며,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억제하는 외부적 강제는 사회적 비용(비능률과 낭비)을 증가시킴.

  ※ 기업은 중간재 부품(또는 최종재 생산을 위한 일부 분업)을 ‘조직’ 내부에서 생산할 수도 있고 외부 계약을 통해 조달할 수도 있음(make-or-buy).

  ※ ‘조직’ 내부의 관리비용 > 외부 ‘계약’의 거래비용 ⇒ 외부 조달; ‘조직’ 내부의 관리비용 < 외부 ‘계약’의 거래비용 ⇒ 내부 생산

- 또한, 기업 내부의 관리비용 규모는 기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기업이 거버넌스 구조를 자유로이 구축할 수 있느냐 여부는 곧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규모를 좌우함.

- 사회 문화적 환경은 ‘계약’과 ‘조직’에서 소요되는 비용(또는 거래비용)의 상대적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 ‘계약’의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직’의 역량이 사회적 번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환경적 요인으로는 정부역할, 생산성에 대한 인식,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노동조합 요구, 시민사회단체 요구 등

  ※ ‘계약’의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씨족, 문중(clans) 등 집단화된 개인들의 상호신뢰가 ‘조직’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도 함. ⇒ 장기적으로는 관계보다 계약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

□ 기업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는 것이 사회적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인가?

□ 저출산·초고령화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세대간 불균형’의 해소인데, 이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다수 양성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국가재정은 조세로서 충당되는 ‘일반재정’과 사회보험료로 충당되는 ‘사회보장’으로 양분되는데, 전자가 현세대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세대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사회보장’의 핵심인 연금제도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현 세대가 쌓고 있는 막대한 적립금을 어떻게 미래의 연금재원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임.

  ※ 국민연금 적립금을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구입하도록 하여 재정에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정책적 기능과 무관한 ‘재무적 투자자’로서 기능하게 할 것인가?

- 연금제도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세대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함.

  ※ 국민연금의 세대별 수익비 ⇒ 1960년생 3.17; 1970년생 2.68; 1980년생 2.32; 1990년생 2.19; 2000년생 2.16

□ 기업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상속세 부과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불로소득 중과’보다 상속세가 기업과 기업 거버넌스의 영속성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되어야 함.

토론2

토론진행자

양 준 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교수

기업환경 이대로 좋은가?

일시: 2022년 11월 15일
장소: 이룸센터
토론자: 양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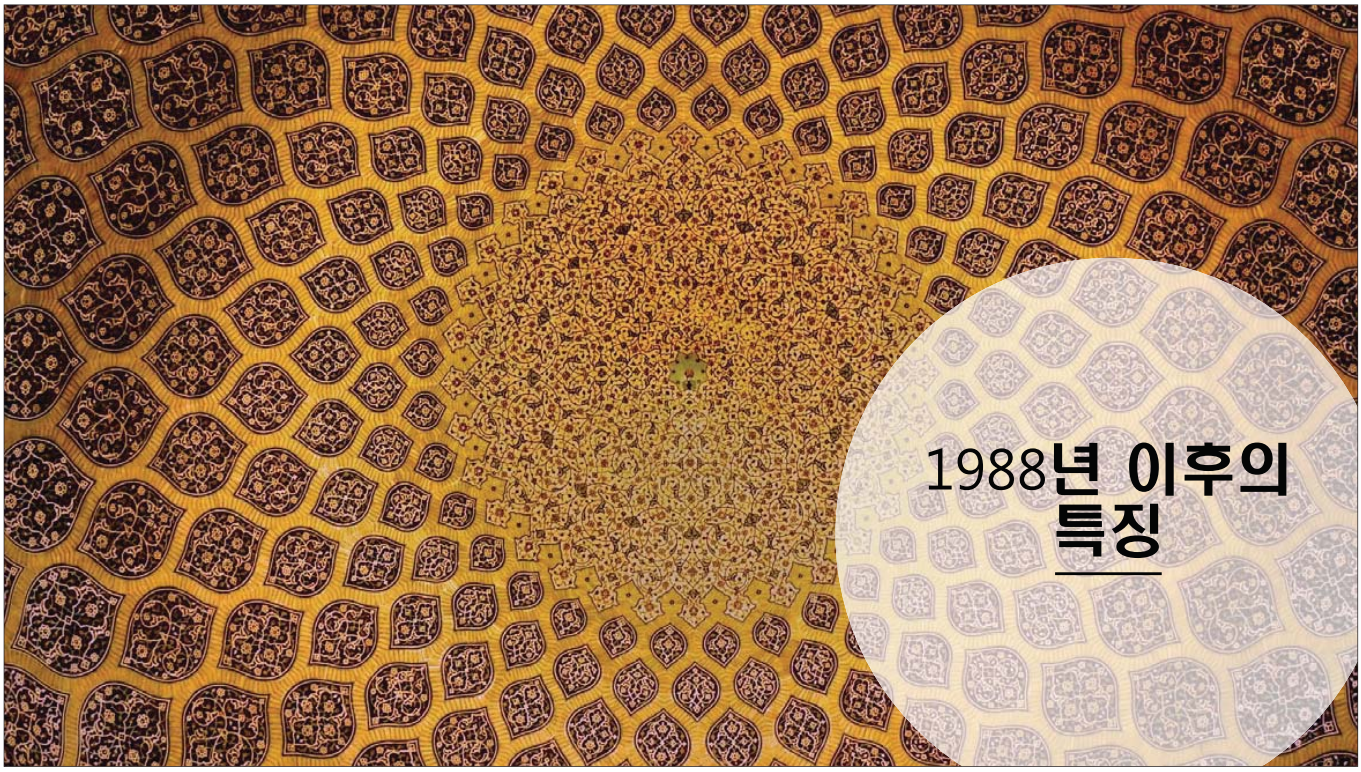

저성장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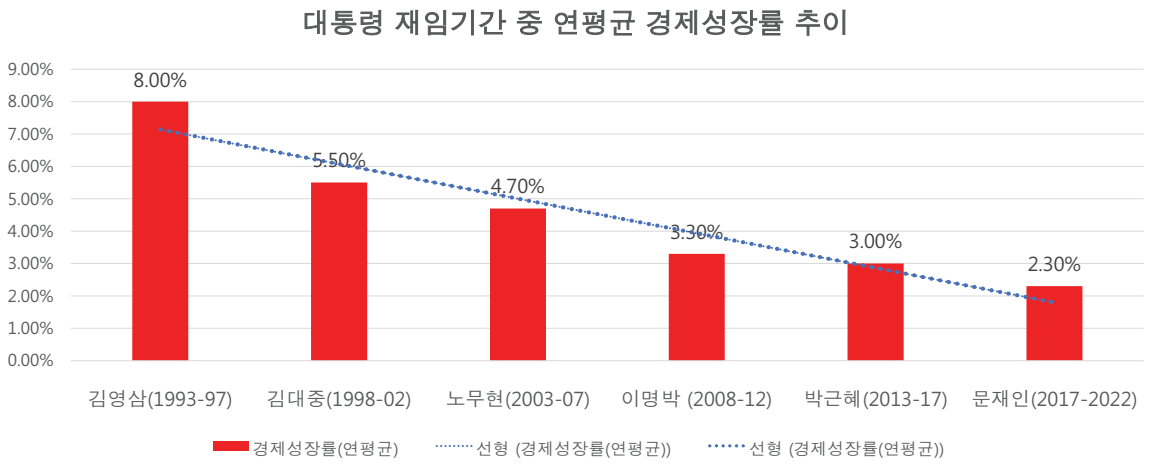

재정지출의 비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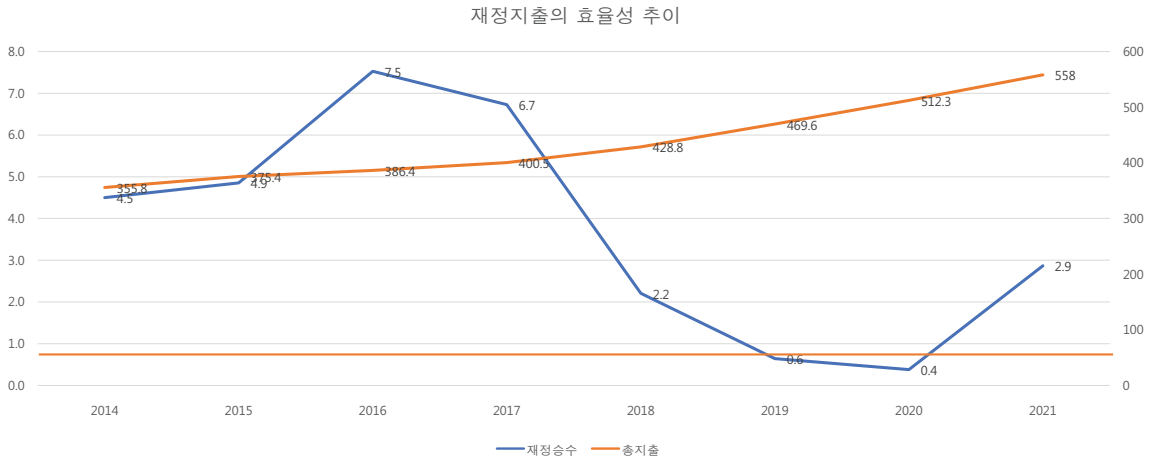

공무원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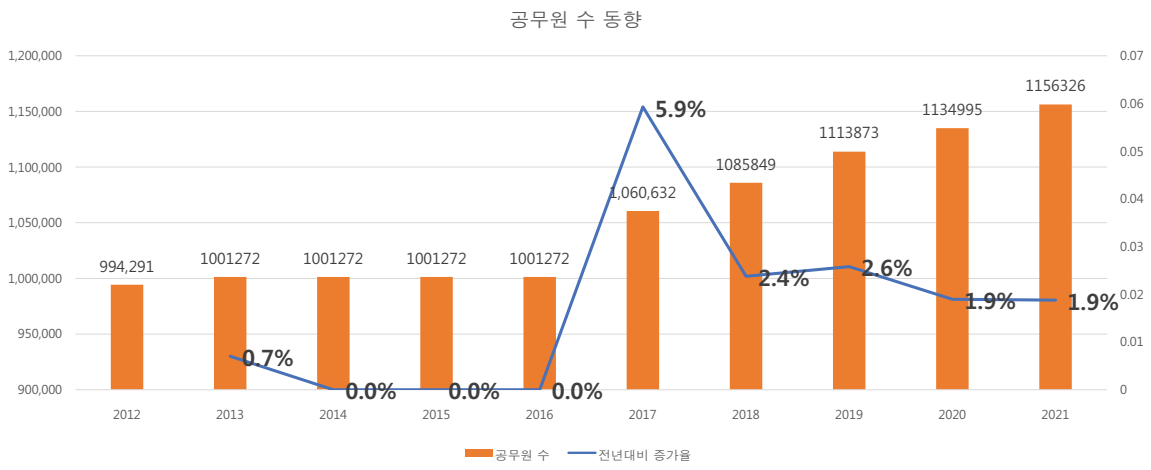

개입주의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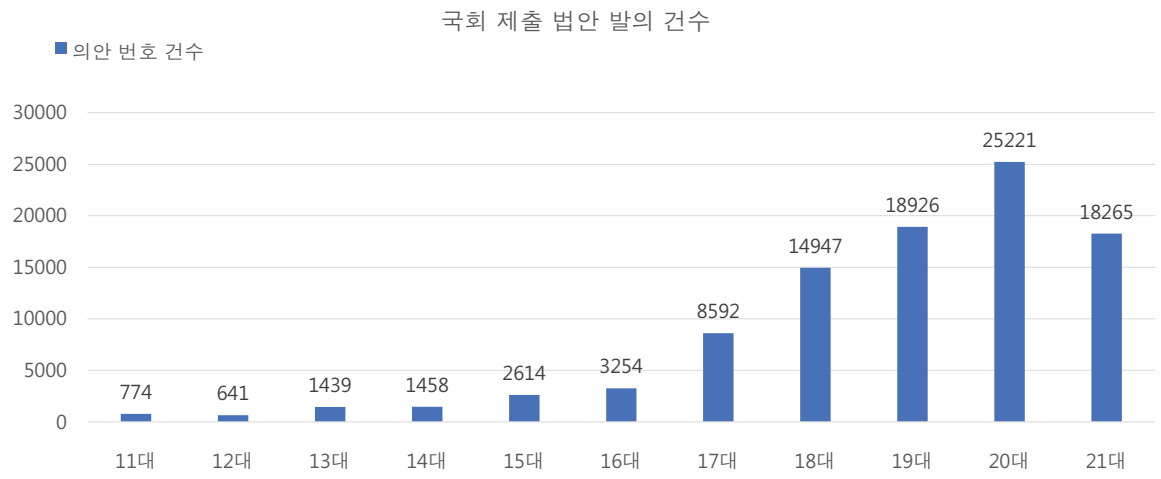

14대 1992.5.30 ~ 1996.5.29

21대는 2020.5.30-2022.11.6)의 중간기간

기업 환경의 악화

기업 환경의 평가 (세계은행의 사례)

창업	건설 허가	전력 수급	재산권
금융	투자자 보호	조세	국제무역
계약준수	파산	근로계약 규제	정부 구매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영향률(1인 이상 전산업 기준)

주52시간제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력 수급

[단위 : 억원] [Unit : 100 Million Won]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원자력 Nuclear Power	98,535	104,789	85,723	78,910	80,941원	90,956원	84,478원
석탄 Coal	139,916	153,792	180,551	188,173	187,927원	152,742원	187,078원
LNG	134,249	111,044	131,286	174,366	164,803원	138,963원	198,852원
유류 Oil	14,137	14,571	9,483	11,774	9,177원	4,222원	4,592원
양수 PSH	4,833	3,842	4,494	4,887	4,181원	3,680원	5,149원
신재생 Renewable	17,833	17,056	20,461	25,251	24,585원	17,983원	27,448원
기타 Others	14	171	272	471	2,293원	6,048원	2,629원
RPS의무이행비용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Payment	6,802	11,811	14,631	20,571	22,422원	20,031원	34,982원
배출권거래비용 Emission Trading Settlement Payment			813	2,624	3,388원	1,301원	5,518원
합계 Total	**416,320**	**417,076**	**447,712**	**507,027**	**499,718원**	**435,925원**	**550,725원**

건설 관련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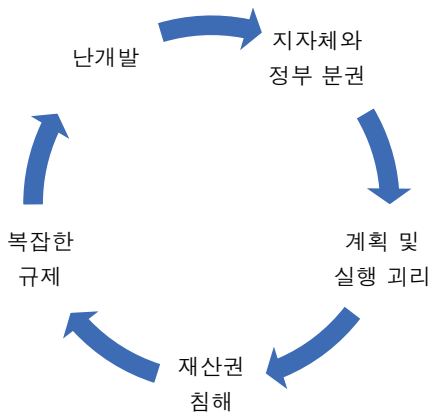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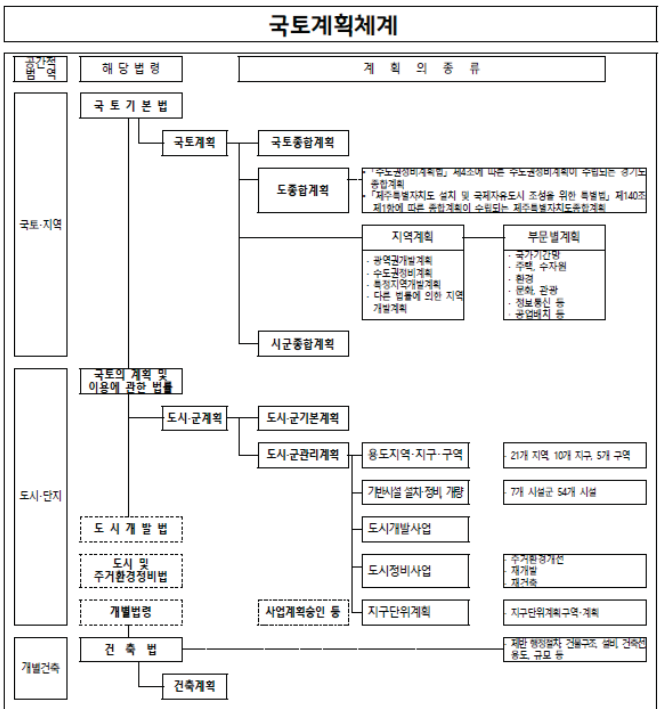

주주 권한 제한

지배구조

- 주주 vs. 경영자
- 지배주주 vs. 소액주주

의결권 제한

- 펀드의 놀이터
- 경영권 약화

국민연금

- 위헌 및 불법 행위

정부 구매

차별적 구매
- 중소기업
- 사회적 기업

가격 평가 ⟷ 기술 평가의 공정성

한국은행 재건축, 조달청 재입찰 결정에 파문 확산

이준성 | 승인 2019.05.14 12:23

계룡건설·삼성물산 모두 조달청에 반발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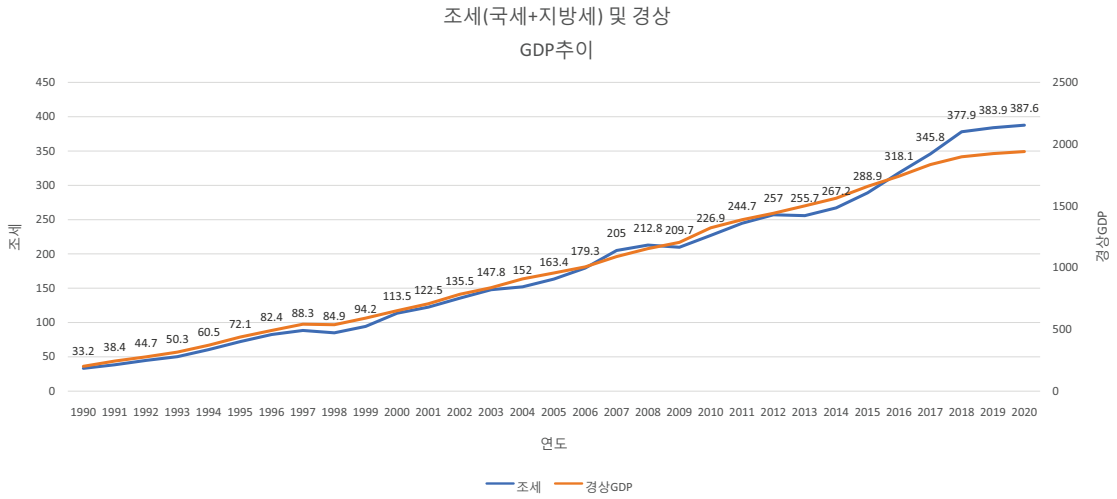

상속세

삼성가 상속세 12조, 잡스의 4배 '세계 최고'… 상당액 대출받아

[이건희 사회환원]

김강한 기자
입력 2021.04.29 03:00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은 상속세로 12조원 이상을 낼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상속세 세입(3조9000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로 건국 이래 최대이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액수다. 2011년 애플 창업자 고(故) 스티브 잡스 사망 당시 유족들이 부담한 3조4000억원의 4배 가까운 금액이다.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국세청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총 26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역할

2020년 5월

- 삼성전자, 해외법인서 배당수익
  반도체 수출총액도 100억달러 돌파
  경상흑자 107.6억달러…5개월 만에 최대치
  13개월 연속 흑자행진
- 5월 수출액은 503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5월(338억8000만달러)보다 49% 늘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승용차(33억2000만달러) 수출액이 92.0%, 반도체(102억6000만달러)는 23.7% 늘어난 결과다.

2022년 10월

- 휘청이는 한국 경제, 1위 기업 삼성전자가 '해결사'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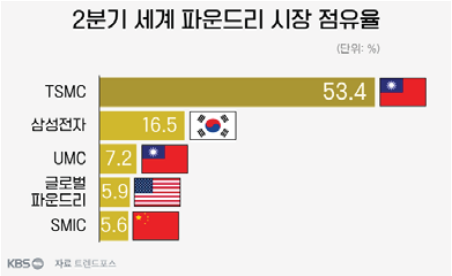

저성장의 끝?

한국경제의 리스크

인구 구조 변화
• 저출산
• 고령화
정부 리스크 증대
• 국가채무 급증
• 비효율적 재정지출
• 저성장 강화
국제 경제 리스크
• 국제 질서의 변화
• 경제 환경의 변화
• 주도 기술의 변화와 자원
자산시장 리스크
• 국민연금고갈
• 금융시장 구축
• 부동산 시장 리스크

토론3

토론진행자

전 삼 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 론 문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
- 회사지분 상속 및 증여세 제도의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

숭실대학교 법학과교수 **전삼현**

1. 머리말

발표하신 내용들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가 기업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분명해 졌습니다.

특히, 기업의 지분에 대한 상증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조세형평성의 법리를 고려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오히려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며 기업의 지속성이 약화되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이에 동의하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 현행법 및 정책 검토

(1) 현행 상속 및 증여세 관련 법 규정

상증법 제63조 제1항 1호에서는 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2개월간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63조 제1항 1호), 최대주주는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과세하면 최대 평가액의 60%까지 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63조 제3항).

그리고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세제한특례법 제30조의6에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2) 윤석열 정부의 가업승계 세제 정책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가업승계에 관한 세제완화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11월 6일 현재 상증법시행령 제15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들이 아직 개정되지 못하고 있지만 2023년에는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좌파성향의 언론 등에서 가업승계 세제를 개편하는 경우 회사를 대대손손 물려줘도 세금 0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금수저가 대물림되는 세제정책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1)]

그러나 윤 정부의 세제정책은 현행 세법체계 내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막는 근본적인 문제점 가운데 일부만 수정한 것으로서 "대대손손 세금 0원"이라는 비판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윤 정부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개선정책의 주요 내용은 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4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600억 원, 30년 이상 1천억 원으로 상향 ②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최대주주&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에서 '40% 이상(상장법인 20%)'으로 완화 ③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범위는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의 고용유지 요건 폐지 ④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고용 유지 요건도 '5년 통산 90%'로 완화. 자산 유지요건은 가업용 자산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에서 40%로 완화 ⑤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천억원 한도로 10억원 기본공제 후 10~20% 증여세율을 적용 ⑥ 과표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 초과는 20% 적용 ⑦ 사후관리기간과 관련해 대표이사 취임은 3년 이내, 대표이사직

1) 한겨레 신문 2022년 7월 22일 기사.

유지는 5년으로 완화 ⑧ 가업 승계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는데, 가업상속공제 방식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⑨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으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 유예. 사후관리는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하고 업종유지 요건은 면제 ⑩ 납부유예는 납세의무자가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때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신청하며 납세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허용 ⑪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을 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납부로 확대 ⑫ 농·어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인상하고,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강화 ⑬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고자산 일부 인수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윤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개선정책은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려는 최소한의 개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상속 및 증여세의 타당성 검토

(1) 상속 및 증여세의 의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점은 있지만, 상속은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당사자간의 의사나 선택과는 무관한 사망사고의 결과이므로 증여나 불로소득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에는 직계가족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본다면 부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경제공동체 내의 특정 재산에 대한 명의만 변경된다는 점에서 상속세를 대가없이 받은 것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상속세든 증여세든 조세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과 과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를 완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입법화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점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유독 과도해 글로벌 스탠다드, 특히 OECD국가들의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회사지분의 상속이나 증여시에는 과세율이 최고 60%에 달해 가업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는 대를 잇는 오랜 전통의 기업들이 탄생하지 못해 몇 대에 걸친 강소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더욱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임에도 창업자가 연로해지는 경우 기존 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보다는 회사를 매각하거나 사업재편이라는 명목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창업자의 직계가족의 회사와 M&A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태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일자리의 감소는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율의 각국 비교

황교수님과 김용민 대표님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증세 수입이 조세수입대비 OECD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세수입액 중 상속증여세 수입이 OECD평균에 5-6배에 달한다고 한다. 즉,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조세수입액 중 상증세가 2.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1.3%, 미국과 독일은 0.5%, 그리고 OECD 평균은 0.4%이라고 한다.

그리고 OECD 회원국들의 명목최고세율이 우리나라는 50%로서 일본 55%에 이어 2위를 차지하지만 최대주주 할증세 적용시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60%로서 전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8개 국가 중 19개 국은 상속세가 없고 다른 국가들 대부분은 가업승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분상속시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고 있는 점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지분상속에 대한 조세율이 과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가업승계시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현행 법제상 가업승계시 60% 세율을 적용받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연간 80개 정도의 회사만이 혜택을 보는 반면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독일도 1만5천개의 회사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에도 가업승계에 따른 특례를 적용

한 결과 100년 이상된 기업의 수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33,079개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9개임을 비교해 볼 때 가업승계시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현행보다는 낮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4. 법리적 문제점과 대안

(1) 법리적 문제점

헌법재판소는 "2002헌바65, 2003. 1. 30."사건에서 최대주주의 상속세율 할증적용에 대한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다룬 바 있다. 물론, 재판관 중 다수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 이유는 지배주주 범위의 광범위성, 특수한 관계의 범위의 다양성 및 우리 사회 증여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최대주주의 상속세율 할증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의 판단에 따르면 기업의 지분에 대한 상속은 경영권 프레미엄을 의미하는데 경영권 프레미엄의 가치는 회사의 규모, 업종, 재산상태, 경영실적, 장래의 전망, 사회의 신인도, 평가의 시기,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상장 여부 등에 따라 상이 함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조세부담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적 의의 또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행 최대주주의 상속세율 할증 규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재판관이 합헌으로 본 이유는 무상으로 경영권프레미엄이 직계가족에게 이전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해야한다는 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경영참여를 하고 경영권프레미엄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부당이득과 징벌적 과세를 과하는 법률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분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상속인 및 수증자가 경영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와 경영에 이미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이나 증여 당시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해 본 결과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부당하게 경영권프레미엄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면제하는 입법작업이 필요하다.

(2) 대안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조세법상의 기본원칙을 고려해 볼 때 최대주주의 지분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경영권 프레미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입법적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상증법은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회사경영에 관해 아무런 기여없이 경영권프레미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위반된다는 획일적 관념하에 입법된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이미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우라면 경영권 프레미엄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이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60%라는 고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업승계를 통한 100년 또는 200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 막는 장애물인 것이다.
이는 직계가족이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직계가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누구든지 경제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규정과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조의 연좌제 금지규정,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제15조의 헌법 정신에 반하는 조세입법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증법의 입법적 문제와 향후 경제상 자유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첫째, 상속인 및 수증자가 이미 경영에 참여했고, 5년 단위로 성장률을 보였다면 경영권프레미엄에 대한 무상의 상속 및 증여가 아니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는

지분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감세 또는 면세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상장기업들의 경우에는 주주 수가 많다는 점에서 정관을 변경해서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통한 100년 내지 200년 기업이 탄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창업자나 그 직계비속의 노력이나 능력에 좌우될 수 없는 오로지 외생변수의 문제로 남게 된다. 이는 기업경영에 불확실성을 제고하는 국가경제발전의 부정적 요인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OECD 국가, 특히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도 100년 또는 200년된 상장기업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회사지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관변경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나 벤처특별상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정관을 통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상증세를 부담하더라도 100년 또는 200년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